

연구보고서 2008-00

경찰상훈제도에 관한 연구

《研究陣》

연구위원(책임) : 황 성 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공동) : 권 용 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2장 상훈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2
제1절 상훈제도의 의의	12
제2절 상훈제도의 특성	13
제3절 상훈제도의 역사적 고찰	14
제4절 상훈제도의 기본원리	16
제5절 상훈 및 포상의 기능	20
제3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상훈 및 포상제도 관련 선행연구	21
제2절 경찰관련 선행연구 검토	22
제4장 경찰 상훈 및 포상제도	25
제1절 법적 근거 및 특징	25
제2절 경찰공무원 관련 포상제도	26
제5장 외국 경찰의 상훈제도	35
제1절 외국 상훈제도 개요	35
제2절 일본	36
1. 일본 상훈제도의 개요	36
2. 일본서훈제도 절차	38
3. 일본의 정부포상제도	39
4. 일본경찰포상제도	41

5. 일본경찰포상규칙	43
6. 현민경찰관(縣民警察官)	47
7. 일본 상훈제도의 전개방향	50
제3절 영 국	51
1. 개 요	51
2. 서훈의 종류 (The Orders of Chivalry)	52
3. 서훈의 제도의 운영	54
4. Bravery Awards의 개요	58
제4절 미 국	61
1. 미국 상훈제도의 개요	61
2. Medal of Valor	61
3. United States law enforcement decorations	67
4.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	67
5. Law Enforcement Purple Heart	68
6.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of Honor	69
제5절 호 주	75
1. 개 요	75
2. 운 영	75
제6절 외국 경찰상훈제도 시사점	76
1. 운영상 특징	77
2. 권위의 원리	78
3. 공정의 원리	79
4. 희소의 원리	79
5. 보상의 원리	80
6. 기 타	81
제6장 설문조사	82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2
제2절 조사대상자의 배경	82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84
1. 현행상훈제도와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	84
2. 가칭 최고경찰관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7
3. 최고 경찰관상 수여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92
제7장 최고경찰관 상(가칭) 제정 방안	93
제1절 최고경찰관상 제정의 배경 및 목적	93
제2절 정부포상 규모의 추이분석	93
제3절 최고경찰관상 시행방향 및 원칙	96
1. 경찰최고의 권위 부여	96
2. 절대적 가치의 제고	97
3. 경찰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선발	97
제4절 최고경찰관상 선발 대상 및 일정	98
제5절 최고경찰관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99
제6절 최고경찰관상 선발 절차	100
제7절 최고경찰관상 선발기준	102
참 고 문 헌	106

표 목 차

<표 4-1> 경찰이 수여받는 훈격	28
<표 4-2> 주요 외국의 훈장체계 비교	34
<표 5-1> 일본 훈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	37
<표 5-2> 일본 포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	38
<표 5-3> 기타 주들의 경찰상훈제도	74

<표 6-1> 직급별 설문응답자 구성	83
<표 6-2> 담당업무별 설문응답자 구성	83
<표 6-3> 근무경력별 설문응답자 구성	84
<표 6-4> 근무지 설문응답자 구성	84
<표 6-5> 경찰상훈제도의 종류와 수에 대한 인식	85
<표 6-6> 경찰상훈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86
<표 6-7> 경찰상훈제도의 효과미흡의 원인	86
<표 6-8> 균등한 상훈기회 보장에 관한 인식	87
<표 6-9> 최고경찰관상 제정에 대한 찬반여부	88
<표 6-10> 최고경찰관상 적정 수상인원에 대한 응답	88
<표 6-11> 최고경찰관 도입 시 선정 직급에 대한 인식	89
<표 6-12> 최고경찰관 도입 시 훈격에 대한 인식	90
<표 6-13> 최고경찰관 도입 시 선발주기에 대한 인식	90
<표 6-14> 최고경찰관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인식	91
<표 6-15> 최고경찰관 추천방법에 대한 인식	91
<표 6-16> 최고경찰관 인센티브 수여여부에 대한 인식	92
<표 6-17> 최고경찰관 인센티브 수여에 대한 인식	92
<표 7-1> 재직공무원 직종별 포상 변동추이	94
<표 7-2> 직종별 정원 변화	95
<표 7-3> 직종별 포상인원 변화	95
<표 7-4> 최고경찰관상 선발 기준 표	103

그림 목 차

<그림 4-1> 범인검거 유공 등 특진 심사절차	29
<그림 4-2> 행정발전 및 기능별 공약추진 유공 특진 심사절차	29
<그림 4-3> 자기·지휘관 추천 특진 심사 절차	30
<그림 4-4> 모범공무원 심사 절차	30

<그림 4-5> 자랑스런 경찰관 선발절차	32
<그림 5-1> 훈추서훈 과정도	38
<그림 5-2> 수상자 지명 과정	55
<그림 5-3> 훈장 평가 과정	56
<그림 5-4> 훈장 수상자 승인 과정	57
<그림 5-5> Bravery Award 메달사진	59
<그림 5-6>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 메달사진	66
<그림 5-7>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 메달사진	68
<그림 5-8>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사진	72
<그림 5-9> 기타 Police Department Medal 사진	72
<그림 7-1> 재직공무원 직종별 포상 변동추이	94
<그림 7-2> 최고경찰관상 선발 절차	10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훈제도는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같은 훈·포장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성격의 직무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경범죄 단속부터 강력범 검거 및 다양한 분야에서¹⁾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범죄와 관련된 것이 많아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도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높다. 최근 5년간('02~'06) 경찰관의 순직 및 공상 발생인원은 순직 132명, 공상 5,373명이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순직은 과로 66.6%, 교통사고 25%, 범인피격 3.8%이며, 공상은 안전사고 42.6%, 교통사고 26%, 범인피격 22%로 나타났다. '06년도에는 순직 17명, 공상 1,399명으로 순직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공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²⁾

경찰분야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상훈제도를 갖고 있다. 상훈체계에 있어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 훈장이다, 대한민국 훈장체제의 특징은 공직분야를 12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다른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이나 문화훈장 등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일의 훈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상훈제도의 이러한 특징은 대한민국 상훈제도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발전, 문화·체육과 관련한

1) 경찰법 제3조에서 경찰의 개념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과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과 법령, 규칙등에 의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약사에 관한 범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환경 단속 과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과 수사, 경비, 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 및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등이 있다.

2)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1_01.jsp

훈장, 새마을 훈장, 예비군 훈장 등 기타 훈장을 제정하였다.

무공훈장은 전시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군인을 위한 훈장이다. 전시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전시와 달리 평화로운 시기일 때는 경찰이 사회안전과 범질서 수호를 위하여 군인과 유사한 또는 업무상 더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테러,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일본·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강력범죄, 테러, 인명구조 등의 분야에서 경찰이 군인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찰상훈과 관련하여 별도의 상훈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영국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사회안전 분야 또는 위험업무 종사자에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경찰을 포함하여 국가의 최고 훈격인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상훈 및 포상제도는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경찰활동은 국민들의 협조가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라는 심리적 요인이다.³⁾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있어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상훈 및 포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한민국 경찰관중 최고의 경찰관을 선발하고, 최고의 경찰관의 공적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대국민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이 사회안전과 범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업무의 위험성과 다양한 분야의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보답하고, 경찰의 사기 진작과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고의 경찰관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이다.

3) 최중술,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2. pp. 405 ~ 407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 하는 경찰이,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자긍심을 갖고 경찰활동에 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찰관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최고경찰상(가칭)의 명칭, 선발주기, 선발인원, 선발 절차, 인센티브 등 경찰 상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국·내외 수상제도를 검토하여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경찰관련 상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국의 사례는 일본·영국·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포상의 명예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경찰상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이다. 문헌조사는 주로 법과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경찰 상훈 및 포상제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문헌조사에는 관련법, 규정(법령, 훈령), 경찰청 지침, 경찰업무 관련 내부자료 및 언론사 보도자료, 각종 웹사이트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국내외 서적과 연구논문 등을 통해 상훈 및 포상에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외국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료가 많지 않아, 상훈제도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낸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경찰관들이 최고경찰관상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제2장 상훈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상훈제도의 의의⁴⁾

상훈제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장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훈장·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다. 상훈제도는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상(賞)과 벌(罰)은 국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며, 신상필벌(信賞必罰)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사회운영의 기본원리이다. 상훈은 국가 및 사회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나라에서의 칭찬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국민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려는 지배수단이다.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욕구단계이론에서 최상위단계의 욕구로서 존경의 욕구를 제시하고 인간은 존경의 욕구를 성취하고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 정의하고 있다.

상훈제도는 공적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조직적 측면에서는 사기양양을 통한 목표달성의 수단이,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수단이, 인간적 측면에서는 자기완성을 위해 동기화를 이루려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상훈제도는 조직구성원에 대해 근무의욕을 높이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로가 뚜렷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 훈장과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포장은 주로 근정훈장·근정포장이며 표창은 표창권자에 따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앙행정기관표창 및 각급 기관표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4) 상훈법 제2조에서는 ‘서훈’을 ‘훈장과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는 ‘정부포상’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포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훈’과 ‘서훈’ 그리고 ‘포상’을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상훈 및 포상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훈’, ‘서훈’, ‘포상’을 구분하지 않는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훈’, ‘포상’, ‘서훈’에 관하여 큰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상이 주어진다.

제2절 상훈제도의 특성

1. 역사성

상훈제도는 역사적 산물로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상훈제도를 갖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영국·프랑스·독일)⁵⁾이나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등의 국가는 통일된 상훈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역사가 짧은 미국 등은 통일적인 상훈제도가 없다.⁶⁾ 상훈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 나라의 역사적 환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훈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지 않는 가장 보수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2. 정치성

상훈제도는 통치자의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정치적 산물이다. 영국의 경우 1215년 군주와 귀족 간의 약정서 대헌장(Magna Carta)을 제정하고, 1628년 권리청원으로 인신의 자유 등 일련의 인권이 보장되면서 군주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수단인 상(常)과 벌(罰)중에 후자를 국민의 저항으로 군주 고유의 것이 아닌 의회와 법원에 의해 견제받게 됨에 따라 벌(罰)은 제한된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상(常)에 대한 군주의 지배력은 아직도 변함없이 유지되며 통치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영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여왕의 생일날을 훈장수여일로 정하고, 훈장수여를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참사원 판례를 중심으로 통치행위론이 발전해 온 바, 영전의 수여를 의회의 내부적 행위,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외교

5) 특히나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각국은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있어 상훈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의 상훈제도 속에 남아있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커먼웰스의 경우 훈장제도가 영국의 것과 유사하거나 그대로 따르고 있다.

6) 영국은 훈장을 'order'라하며, 미국은 'decoration'이라고 부른다. 영국과 달리 미국은 일정한 사건에 대한 기념의 형태로 수여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선전·강화 등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일련의 행위로 보고, 국참사원이 법리적 심리를 거부하는 등 통치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영전 수여를 통치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⁷⁾ 이와 같이 상훈제도가 상벌제도와 달리 통치행위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상훈이 개인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권리의 반환 요구가 적었기 때문이다.

3. 명예성

상훈은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인간의 행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기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나폴레옹은 사기는 병력보다 3배 더 중요하다고 하며, 부하에게 나누어줄 충분한 훈장을 주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고 한다. 이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인간 본성을 훈장을 통하여 자극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훈장은 훈장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금속조각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의미, 즉 명예성이 부여될 때 어떠한 사회적 보상보다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⁸⁾

제3절 상훈제도의 역사적 고찰

1. 훈장의 기원

훈장의 시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고대 그리스에서 원형이나 초승달 모양의 배지(badge)를 만들어 전사들의 가슴에 패용토록 한 것이 최초의 훈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훈장(Order)이라는 말은 라틴어 'Ordo'에서 기원하였는데, 'Ordo'는 어떤 의무를 지고 있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르던 제한된 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세에 카톨릭이 번창하고 교황이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던 사회에서 수도원이나 이와 비슷하게

7)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8) 황성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2006.

일정한 의무와 규율에 따라 행동하던 특수한 계층은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식을 하였던바, 이것이 바로 훈장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⁹⁾

2. 우리나라 상훈제도의 역사적 변천(1945년 이전)

부족국가 시대에, 부족의 지배자들은 타 부족과 싸워 영토를 확장한 자 또는 식량을 많이 구해온 자에게 말과 노비를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¹⁰⁾

역사적으로 상훈의 기능을 담당했던 기관들을 살펴보면, 부족국가시대 또는 삼국시대에 어떤 공적에 대해 상과 관직을 부여하는 등의 포상을 행한 기록이 있지만, 하나의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 포상을 행한 것은 통일신라시대라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상사서(賞賜署)에서는, 통일공로자와 왜구의 침략을 막은 공로자, 국난공신(國難功臣) 등에 대해 그 공적의 정도를 심의해서 관등을 상향 조정 및 관직 수여,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는 등의 포상을 행하였다.¹¹⁾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의 공과를 심의하고 판정하던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에는 공신도감(功臣都鑑) 또는 충훈부(忠勳府)에서, 대한제국시대에는 표훈원(表勳院)에서 상훈의 기능을 담당하였다.¹²⁾

우리나라에서 훈장제도가 근대적으로 발전된 것은 구한말 서양문물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이다.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훈장조례가 공포되면서부터 훈장제도가 시작되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훈장조례가 소멸되었다. 훈장조례에는 최고등급인 금척대훈장부터 서성대훈장, 이화대훈장, 태극장, 팔괘장, 자웅장, 서봉장 등의 훈장제도가 시행

9) 방중식, “육군 상훈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0) 행정자치부, 정부상훈편람, 행정자치부, 1998.

11)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처음 창부에 속하였다가 경덕왕 때 사훈감(司勳監)으로 개편하고, 혜공왕 때 다시 상사서로 개편되었으며, 고려의 고공사(考功司)는 처음에는 사적이라 칭하다가 성종 14년에 상서고(尙書考)로 개칭하였다. 조선의 공신도감은 충훈부의 별칭으로서 처음에는 공신도감, 충훈사로 부르다가 7대 세조때 충훈부로 개편하였고, 고종31년에는 기공국(記功局)으로 개편하였다.

12) 고려시대에는 공신당(功臣堂)을 두어 1등 및 2등 공신의 화상(畫像)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컬었고,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초기에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증명(功臣證明)으로 하였으나, 말기의 중흥대신(中興大臣)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과 토지·노비·금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을 주었다. 아울러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문서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또는 공신상훈교서(功臣常勳敎書)라 칭하였다. 대한제국시대에는 표훈원에서 각 부·원·청으로부터 제출된 이력서를 검토하여 의정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하였다.

되었다.¹³⁾ 금척·서성·이화대훈장은 단일등급으로, 태극1등장을 기 서훈한 공신에게 이화대훈장을, 이화대훈장을 기 서훈한 자에게 서성대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최고 등급인 금척대훈장은 왕족이나 서성대훈장을 기 서훈한 공신에게 수여하였다. 태극장을 비롯한 자응장, 팔괘장, 서봉장은 각각 8등급으로 나누어 공훈의 크고 작음에 따라 수여하도록 등급화 되어있었는데, 자응장은 무관들에게만 수여하는 무공훈장제도였다.

제4절 상훈제도의 기본원리

상훈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는 ‘권위의 원리’, ‘공정의 원리’, ‘회소의 원리’, ‘보상의 원리’가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상훈제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최고경찰관상을 도입하고자 한다.

상훈제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가져야 할 원리로서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뿐만 아니라 그 기반위에 있는 정부에 의해 그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권위의 원리’, 둘째, 포상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가 객관적이며 공정하여야 한다는 ‘공정의 원리’, 셋째, 상훈의 남발을 막음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회소의 원리’, 그리고 수상자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보상의 원리’가 있다.¹⁴⁾

상훈의 본질적 의미는 명예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예(honor)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라고 하며,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정치적 생활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스토아학파에서는 건강·부(富)와 더불어 지고선(至高善)으로 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리고 근세에는 시민생활의 발달과 함께 인격 존엄에 관한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¹⁵⁾

훈장은 사회적 공적에 대한 인정의 표시이며 국가권위의 상징이다. 훈장이 명예로운

13) 비웅장(雌雄章)은 현재의 무공훈장에 해당되며, 서봉장(瑞鳳章)은 부인들에게만 수여하였으며, 기타 훈장은 기타의 훈장은 공적훈장의 성격이었다.

14) 배윤호, “포상제도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5) 황성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2006.

이유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민전체의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받아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훈제도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통합을,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는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아존중과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1. 권위의 원리

권위(authority)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서 남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기술·실력’이라고 되어 있다. 1802년 나폴레옹이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프랑스 훈장의 최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훈장은 그 붉은 리본을 달고 전차를 타면 황급히 좌석을 양보하여 줄 정도로 그 권위는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훈장이나 표창이라는 것이 영광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수상자의 위대성에 대한 찬양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정부의 포상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하나의 종잇조각이나 쇠조각일 것이다.¹⁶⁾ 포상의 가치는 공식적이고 영속적인 명예성에 있기 때문에 수상자에 대하여는 정부나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그 명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¹⁷⁾

포상은 일정기간 정권을 담당한 유한한 정부가 주는 포상이 아니라 정통성을 갖는 국가가 주는 포상이어야 하고,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이 주는 훈장이어야 하며, 정통성이 있는 정부에 의해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수여권자가 그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의식을 갖추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권위가 부여될 때 포상의 영예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의 원리

공정성이란 민주사회에서 선악, 정사 등을 분별하고 평가할 때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

16) 藤堅準二, 日本賞勳制度. 大阪:保育社, 1972, p. 69.

17) 황성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2006.

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정의의 기초임과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 요소이다.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하면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의사결정 결과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였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절차적 정의란 의사결정에 사용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을 의미한다.¹⁸⁾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영예성을 부여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적이 없거나 자격이 부족한 자가 상을 받게 되는 경우 상이 국가사회를 통합시키고 국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논공행상으로 인해 조직과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심사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업적평가, 정치성의 배제, 적절한 심사절차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심의기구 및 운영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심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심사위원은 사전공개 또는 사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⁹⁾

3. 회소의 원리

회소가치가 있다는 것은 ‘드물기에 인정받는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훈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한 때는 훈장이 고양이 목걸이로까지 전락한 일이 있다.²⁰⁾ 영국에서는 “비틀즈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O.B.E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O.B.E와 같은 훈장의 소유자사이에서 사퇴소동과 반납론이 일어나 파문이 인적도 있었다.²¹⁾

단순히 일정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훈장이 수여되거나, 특정단체의 회원에게 매년마다 해당기념일에 일정 규모의 포상이 관례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포상은 의미 없는

18) 황규대 외, 1999, 조직행위론, 박영사, p.203.

19) 황성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2006.

20) 藤堅準二, 日本賞勳制度. 大阪:保育社, 1972, p. 69.

21) 藤堅準二, 日本賞勳制度. 大阪:保育社, 1972, p. 141.

O.B.E(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의 약어):주로 민간인에게 수여하며 여성에게 수여한 최초의 영국훈장.

포상일 것이다. 희소성 없는 포상으로 혜택까지 받는다면 상훈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며, 신상필벌 등의 상식적인 사회윤리가 훼손될 것이다. 포상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무분별하게 수여된다면 국가상훈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적 상황이 달라져도 영예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상훈수여자를 엄선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훈장의 바른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보상의 원리

보상의 심리학적 의미는 ‘행위를 촉진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는 칭찬이나 물질’을 의미한다. 앞서 상훈제도의 역사적 특징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선조들은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과 벌이라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훈장과 표창을 통하여 인간의 자부심과 명예심을 자극하여 피치자들로부터 충성심과 복종을 이끈 보상제도는 어떤 사회적 보상체계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피치자들의 자발적 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상과 관련하여 물질적 보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고, 형벌은 피치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하여 그들의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효용성의 한계가 있다고 할 때,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명예심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지식계층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훈장과 같은 보상제도는 매우 유효한 것이다.²²⁾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훈장의 종류·수여방법·수여대상 등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선진국들에서는 훈장을 보상체계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훈자에게 명예적 상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명예훈장 수훈자에게는 월 100불의 종신연금지급과 전역 후 군 매점 이용 및 미국 내에서의 군용기 여행특권이 부여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수훈자 아들에게는 사관학교입학의 특혜가 부여되고 공군의 경우에는 사병에 한하여 1계급 특진의 특혜가 부여되기도 한다. 대만은 연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특전은 없지만 국광훈장이나 청천백일훈장 수훈자 본인과 직계후손에게 1회에 한하여 형을 감축하는 특혜가 부여된다.²³⁾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발전에 공헌한 표시로 훈장을 받음으로써

22) 최영민, “대한민국 상훈체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1.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물질적 혜택을 받았다면 상훈수장자의 만족감은 더욱 클 것이다. 상훈 및 포상을 받은 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의 물질적·정신적 보상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훈 및 포상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훈수여자 선정시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상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훈이 수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5절 상훈 및 포상의 기능

조직원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명예성 있는 상훈 및 포상제도는 조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게 하는 내적 동기요인이 되며, 업무에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조직에 충성을 하도록 하게 한다.

상훈 및 포상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여부와 사회봉사의 정도에 따라 수상자를 선출하게 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이 포상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달성과 사회봉사에 힘쓰게 되며, 조직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동기요인이다.

상훈 및 포상은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포상은 구성원 개개인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만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조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러한 동기를 통하여 조직원의 사기를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23) 정무설, “정부상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172.

제3장 이론적 배경

정부 훈·포장체계 등 상훈 및 포상제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훈 및 포상은 형벌이나 징계와 같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감성적인 인식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상훈은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고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이 제도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상훈 및 포상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은 정부 훈·포장체계 등 상훈 및 포상제도에 관련한 연구들에 대한 내용이다.

제1절 상훈 및 포상제도 관련 선행연구

양기옥(1982)은 ‘군상훈제도에 관한 연구-육군을 중심으로’에서 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진급우대 및 포상금 지급, 포상의 적시성을 위한 중간부대의 공적심사 생략, 전시에는 공적심사위원회 폐지 및 추천서류 축소, 포상 수여기준 구체화, 부대별 포상 불균형 시정, 과도한 포상의 통제 등을 주장하였다.

정무설(1997)은 ‘정부상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275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상훈의 명예성, 신뢰성, 공정성, 효과성, 상훈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훈·포장의 통합, 상훈법 체계의 일원화, 공적심사의 철저, 포상인원의 축소, 포상의 분야별·직업별·기관별 균형유지, 상위등급 억제, 포상가점제도 부활, 정년퇴직자 포상폐지, 치탈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최영민(2002)은 ‘대한민국 상훈체계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상훈제도를 체계론적으로 접근하여 상훈체제를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으로 분류하고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협의 과정 합리화 방안 마련, 각 부처 자체 공적심사의 내실화, 상

훈국 신설과 민간인 참여 확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상수여 기준의 마련, 독립된 포상식 거행, 사후관리의 개선, 포상종류의 간소화, 퇴직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포상추천권자의 확대 및 발굴포상제도 도입, 훈장 반납제도 도입, 표창 취소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배윤호(2003)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서 상훈업무를 담당하는 16개 부처의 포상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면담을 통한 자료를 통하여 ‘권위의 원리’, ‘공정의 원리’, ‘희소의 원리’, ‘보상의 원리’ 등 4가지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포상제도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상징을 통한 국민통합 기능과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는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제고 및 경쟁력강화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포상 추천권 자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 치탈제도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정비, 훈·포장의 종류와 등급을 축소 통합, 포상 자 명단을 공개 및 적극적 홍보, 포상관련 각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정부포상 심의회를 신설 등을 주장하였다.

황성원(2006)은 ‘정부 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외국사례 벤치마킹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기타 서훈관련 이해관계자들 300명에 대하여 서훈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과 벤치마킹을 통해 서훈제도의 운영상에 있어 공정성, 영예성, 희소성, 보상의 원칙이 중요하며, 현행 5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훈·포장의 등급에 대하여 축소·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는 훈·포장 명칭 등을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 등을 얻었다. 정부 서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훈장체제를 분야별 통폐합 및 등급을 일괄적으로 축소, 분야별 구분없이 단일한 훈장체계로 2~3종의 훈장을 서열화 그리고 분야별 구분없이 단일한 훈장체계로 2~3종의 훈장을 서열화 해야 한다는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절 경찰관련 선행연구 검토

경찰분야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도 경찰상훈 제도 및 포상제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경찰의 사기, 직무만족도, 직무몰입과 같은 개념을 연구하는데 있어 상훈 및 포상제도가 대안으로 인용되고는 있다. 하지만 상훈 및 포상제도는 하나의 수단일

뿐, 중심이 된 연구는 없다.

1. 사기,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개념

White(1955)는 사기(morale)란 “사람이 스스로 택한 영역에서의 업적이나 작업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지적·도덕적 만족감을 토대로 하여 자기가 종사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전력을 경주하려는 일종의 심리상태라고 하며, Leighton“(1947)은 ”어느 집단을 구성하는 일단이 사람들이 시종일관 결단하여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직무만족(Job-satisfaction)²⁴⁾은 매우 광범위하게 연구된 직무관련 태도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Locke(1976)가 주장한 “개인의 직무 혹은 직무 경험들에 대한 평가로부터 야기되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emotional state)”로 이해되고 있다.

직무몰입(job involvement)은 Robbins·Coulte(2002)에 따르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업무성과가 자존심에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2. 경찰 사기,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대한 선행연구

경찰 분야에 있어 사기,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서규하(1997)는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근무성적평정 절차의 공정성 여부, 포상 및 징계여부의 공정성 여부가 직무만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보환(2001)은 비간부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위생요인 중 징벌과 직업의 안정성이 직무만족과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24) 경찰관의 직무만족도는 경찰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상원,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 및 교육훈련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초급간부경사·경위 경찰관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최학봉(2005) 인사행정 절차에서 공정성이 확보와 경찰관에 대한 복지·후생의 지원 정책이 경찰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⁵⁾

정우열·손능수(2006)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인적요인, 직무환경요인, 직무내적요인, 능력요인, 경찰환경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직무환경이 좋을수록, 조직 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⁶⁾

유영현(2007) 상징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여, 공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기는 합리적·타산적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사명감과 직업에 대한 명예도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훈 및 포상제도는 경찰분야에 있어서 사기,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사기, 직무만족, 직무몰입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게 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최학봉, “경찰의 사기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공안행정학보 제 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26) 정우열·손능수, “순찰지구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3호, 서울행정학회, 2006.

27) 유영현, “보상유형별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 14권 제 1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제4장 경찰 상훈 및 포상제도

상훈 및 포상제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상제도는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1절 법적 근거 및 특징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훈제도에 관하여 3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1조3항에서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으며”,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고”, 헌법 제89조는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3개 조항 다음으로는 서훈업무에 관한 일반법으로 상훈법과 동법시행령이 있다. 상훈법과 동법시행령은 훈·포장의 종류, 수여절차, 기타 상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상훈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외에 서훈(훈장)과 별도로 표창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부표창규정이 있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 상훈제도는 훈장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순으로 체계화(훈격)되어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실시만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운영을 위해 매년 정부포상업무에 관한 지침을 통해 전반적인 포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도 상위 법 내지 상위지침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는 포상의 목적, 기본방침, 포상대상 및 분야, 포상협의 및 추천 절차, 포상운영평가 및 서훈취소 행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절 경찰공무원 관련 포상제도

1. 정부상훈제도

정부상훈제도는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표창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을 지칭한다.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이 지침에 준하여 각 기관의 실정과 표창의 취지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특별승진제도, 자랑스런 경찰관상 등을 통해 경찰만의 위한 표창제도를 두고 있다.

가. 공무원포상

1) 재직공무원포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직공무원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일원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수시포상을 할 수 있다.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의 정도, 직급이나 직위, 재직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직급(위)별 훈격 결정 기준에 준하여 정하고 있다.

2) 퇴직공무원포상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정년퇴직 공무원중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퇴직일인 6월말, 12월말에, 교육공무원은 퇴직일인 2월말, 8월말에, 군인·군무원은 퇴직일인 매월말 포상한다. 경찰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공무원중 경력직공무원에 속하므로 퇴직일인 6월말 12월말 포상하고 있다.²⁸⁾

나. 포상의 훈격

1) 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며 경찰공무원의 훈종 및 훈격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경찰공무원의 훈장의 특징은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특징이다.²⁹⁾

28) 명예·위원 등 기타 퇴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 : 6월말, 12월말, 교육공무원은 2월말, 8월말 군인·군무원은 퇴직일인 매월말 포상한다.

29) 기타 공무원의 훈종 및 훈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무직·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별정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장관(급) 이상	차관(급)	1~3급 고위공무원	4~5급	6급이하 (기능직·고용직 포함)

- ② 교육공무원 : 재직년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표 4-1> 경찰이 수여받는 훈격

훈 격	청조 (1등급)	황조 (2등급)	홍조 (3등급)	녹조 (4등급)	옥조 (5등급)
계 급	장관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하

2) 포장 및 기타 표창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기타 공무원은 근정포장을 수여한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근정포장을 수여받는다.

대통령 표창은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다. 특별승진제도

중요범인 검거 등 유공자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 임용함으로써 특진의 영예성제고와 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재직년수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③ 연구·지도직, 계약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 일반직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상당계급		차관급상당 직위	1~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4~5급상당 직위	6급이하 상당 직위

④ 소방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이하

⑤ 군인 및 군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보국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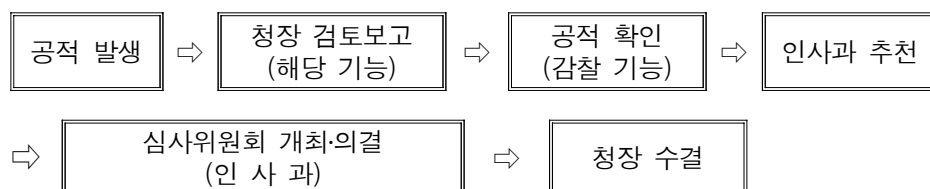
훈 격	통일장 (1등급)	국선장 (2등급)	천수장 (3등급)	삼일장 (4등급)	광복장 (5등급)
군인계급	대 장	중 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이하
군무원계급			1급	2~4급	5급이하

본청·지방청별 특성에 맞추어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직무몰입도 제고를 위하여 경감 특진은 본청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의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특진 정원으로 책정하여 연간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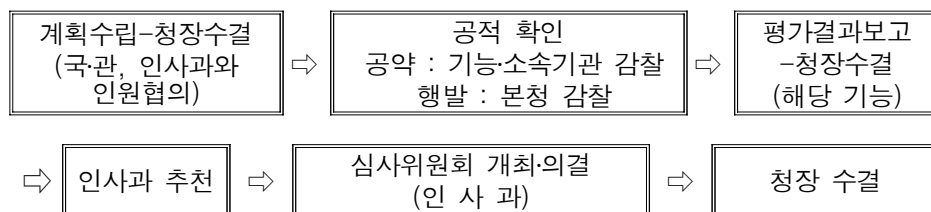
특진정원 중 일부를 지방청에 배정하고 있으며, 공약특진 확대 등으로 업무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각종 치안성과 제고를 위해 기능별 공약특진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공약특진의 기능별 정원은 직무특성과 균형을 고려, 적정 배정인원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민생안정 확립에 공이 큰 중요범인 검거의 경우 경감까지 특진시키고 있다.

범인검거 및 공약특진 심사는 즉시성 있는 특진, 즉 성과가 발생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기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월 또는 수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성과의 계량화가 어려운 행정발전 공적심사는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내 특별승진제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공적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진 추천기준 강화를 통해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 특진 기준 사전 공지로 근무의욕 고취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적 검증을 위한 현지실사, 엄격한 감찰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대상 및 절차는 다음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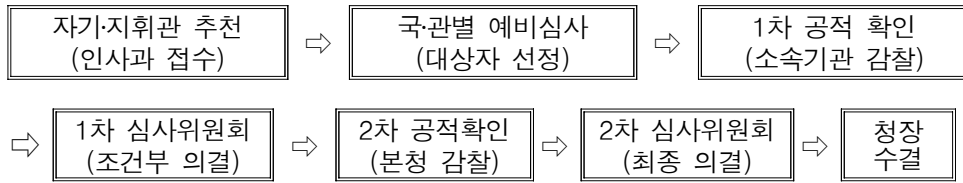
<그림 4-1> 범인검거 유공 등 특진 심사절차



<그림 4-2> 행정발전 및 기능별 공약추진 유공 특진 심사절차



<그림 4-3> 자기·지휘관 추천 특진 심사 절차



라. 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은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청렴·성실한 자세로 국민에 봉사하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을 선발 연 2회 포상하도록 하여 숭선수범하는 직무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포상제도이다.

심사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경감이하 경찰관 및 6급 이하 공무원이며, 대상자 선발은 하위직과 여성공무원, 소수직종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부속기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선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선현장 근무자 배려차원에서 추천 인원 중 지구대 직원을 20%이상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4> 모범공무원 심사 절차



마. 모범선행경찰관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묵묵히 자기책임을 다하는 「모범·선행경찰관」을 발굴·포상하고, 수범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 경찰관에게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포상제도이다.

경찰청 및 지방청에 「모범·선행경찰관」발굴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범선행경찰관을 발굴하고 있다. 전담팀에서 공적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모범·선행경찰관으로 선발된 경찰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심사대상은 맡은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전(全)경찰관들로부터 모범 경찰관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성실히 해결해주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자, 직원들이 기피하는 어렵고 힘든 업무를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 모범·선행경찰관으로 민원접수, 인터넷게재, 신문 등 언론보도로 경찰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자, 인권보호 활성화에 대내·외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동료 및 주민들로부터 모범·선행경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포상에서 소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절차는 경찰청과 지방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찰청은 본청 및 지방청에서 선발한 모범경찰관 후보, 경찰청 감찰요원이 외근활동중에 발굴한 경찰관,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청 전담팀에서 확인·점검한 공적내용에 따라 경찰청 모범·선행경찰관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 포상을 결정한다. 지방청은 지방청 전담요원이 대상자를 외근활동 중에 발굴 또는 지방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접수하여 접수된 경찰관의 공적내용을 전담팀에서 현지 확인·점검한 후, 공적의 경중에 따라 지방청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 자체 포상 또는 경찰청에 포상을 신청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감찰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6인 이내로 구성되며 수시·분기별로 접수된 공적내용 심의하여 특진 대상자 추천 및 포상후보자 선정을 하고, 전담팀이 확인한 공적내용 검토 및 추천 훈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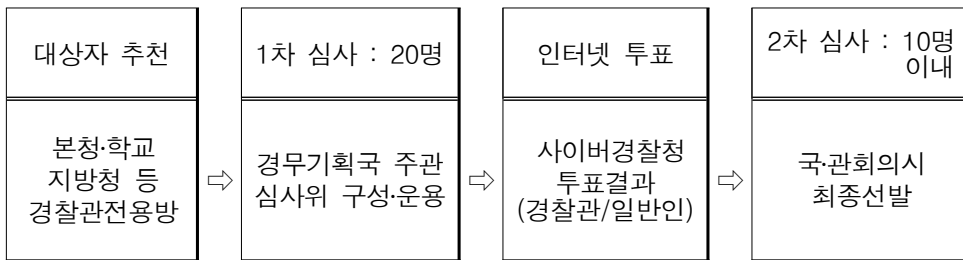
바. 자랑스런 경찰관

주요범인검거 등 경찰의 위상과 조직원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킨 경찰관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경찰의 표상으로 삼아 널리 홍보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경찰인의 역할모델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포상제도이다.

년 1회 선발을 원칙으로 인터넷 추천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 선발은 하위직과 여성공무원, 소수직종공무원,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선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선발시 지구대 등 20%이상을 차지하도록 치안현장 근무자를 배려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경찰청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 병행하고 있다.

선발인원은 10명 이내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원조정이 가능하며 주요 범인 검거, 선행·봉사, 인명구조·재산보호, 사회안정, 기타에 각 2명씩 선발한다.

<그림 4-5> 자랑스런경찰관 선발절차



제3절 경찰공무원 관련 포상제도의 문제점

경찰공무원 관련 포상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정부 서훈제도상의 문제점과 경찰내부 상훈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현 정부포상제도는 서훈의 가치 저하 및 국민의 서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훈·포장제도의 본래적 기능인 영예성 제고가 미흡한 실정이며, 훈·포장의 지나친 세분화와 5등급으로 나뉜 훈장 종류의 과도한 증대, 정부조직내 표창이 정부 서훈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국가훈장체계상의 모순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³⁰⁾ 이에 정부는 수차례의 상훈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정비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각 정부부처에 배포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통하여 상훈의 영예성과 권위, 상훈절차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서훈의 범위가 다양하고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형평을 고려하여 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훈제도가 국가발전 및 안보와 관련하여 발전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경찰분야에 대한 서훈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전반적인 정부서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나 경찰분야에 대한 훈장이 없어 경찰이 받는 훈장은 근정훈장이 대부분이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훈장의 수여 대상에는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라는 명확한 훈장수여 대상이 있지만, 일반공무원과 교원과 차별이 되지 않아 경찰이 사회에 괄목할 만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포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경찰업무의 다양화로 인하여 담당 부서별·업무별 훈장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 등에서도 실적위주의 경찰포상제도가 경찰간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일련의 기록 조작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적 등 경찰이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을 세웠을 때 이러한 공적이 바로 훈장에 가기 보다는 포상이나 표창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다. 훈장의 경우에는 영예성이 강조되는 제도로서 일련의 공적이 발생할 경우라도 이에 대응하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훈장보다는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포상이나 표창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30) 황성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2006.

문화일보, 2007-09-07, “훈·포장 남발하는 盧정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07010301271490021>

< 표 4-2 > 주요 외국의 훈장체계 비교

국 가	주 요 내 용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장 12종, 분야별로 세분화 ▶ 훈장 각 5등급 (무궁화 대훈장 제외) ▶ 포장 12종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장은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화장(2등급), 동화대수장(단일), 육일장·보관장 - 분야별 구분없음, 단 문화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문화훈장(단, 일급 수여) ▶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훈장 수여 ▶ 서훈관련 홈페이지 있음³¹⁾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장 10종 ▶ 일반적으로 수여되는 훈장은 분야별 구별 없는 대영제국훈장(5등급)을 수여하고 있음 ▶ 경찰분야 훈장 있음 ▶ 서훈관련 홈페이지 있음³²⁾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장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옹도뇌르 훈장(5등급), 국가공적훈장(5등급) ▶ 분야별 구분없음 ▶ 서훈관련 홈페이지 있음³³⁾

자료 : 황성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정리 pp. 31~ 74 요약정리

31) <http://www8.cao.go.jp/intro/kunsho/index.html>

32) <http://www.honours.gov.uk/>

33) <http://www.legiondhonneur.fr/flash/index.html>

제5장 외국 경찰의 상훈제도

제1절 외국 상훈제도 개요

영국, 일본 등은 훈장이 수여대상이나 분야별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우루과이, 스위스 등과 같이 훈장이 없는 나라도 있으며, 이스라엘, 캐나다, 터키 등은 단일 훈장을 사용하고,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영국훈장과 유사한 훈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네갈, 아이보리 코스트 등은 프랑스와 유사한 훈장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훈장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전통과 형태가 독립 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상훈제도 중 훈장의 경우에는 군 공적에 수여되는 군인훈장과 공무원 훈장이 대부분이다.

영국에 있어 경찰이 받는 최고영예의 상은 훈장이다. 영국은 총리상 부문, 외교부문, 군대 부문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결정된다. 경찰도 기존의 훈장수여 대상자가 되나, 대부분 Bravery Awards에 의하여 수상된다. 그러나 Bravery Awards는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상이 아니라 인명구조와 관련된 의료(응급), 소방 또는 시민들 대상으로 수상하고 있다. 하지만 London Gazette에 Bravery Awards상 수여자들의 공개된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경찰포상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에 있어 경찰 포상 제도는 훈장, 경찰내 포상제도, 기타포상제도 계층화 하여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특히, 경찰 내 표창제도에는 9가지나 있어 다양한 표창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색있는 경찰 상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TV 방송 및 신문, 기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현민경찰관」이라는 수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실시되었던 청룡봉사상³⁴⁾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34) 조선일보사와 경찰청에서 함께 시행한 표창제도로써 매년 총 5개부문(총, 신, 용, 인, 의)에서

미국은 주로 군인관련 훈장제도가 잘 발달하였으나, 9·11테러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를 제정하여, 9·11에서 활동한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안한 치안상태 및 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법부 주관하에 사법활동 영역에서 공훈이 있는 경찰관, 소방관, 기타 사법활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the Medal of Valor가 제정되었으며, 그 밖에 A Law Enforcement Purple Heart 등의 훈장이 있다. 미국은 경찰관련 훈장 및 상훈제도는 최근에 와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욕시는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of Honor,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of Valor와 같은 상훈을 실시하고 있다. LAPD의 경우에는 Los Angeles Police Medal of Valor를 최상위로 하며, Los Angeles Police Medal, Los Angeles Police Star 및 11개의 표창을 갖고 있다.³⁵⁾

미국은 각 주 경찰마다 다양한 형태의 상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공훈에 의한 포상 외에도 사격·수영·응급 등 다양한 능력(자격)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도 있다.³⁶⁾

제2절 일 본³⁷⁾

1. 일본 상훈제도의 개요

1872년 9월 메이지정부는 「좌원」³⁸⁾에 훈장제도의 심의를 지시하여 1874년 좌원의 건의에 따라 취조어용괘(取調御用掛)를 임명하였다. 취조어용괘(取調御用掛)는 서구 제국의 훈장제도 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의 훈장제도 창설을 향하여 검토를 진척시켜 1876년 4월에 「훈장 종군기장 제정 건」(태정관포고 제54호)이 공포하여 일본 훈장제도가 시

근무내역 봉사활동이 탁월한 경찰(충신용)과 민간인(인의)을 대상으로 시상한 제도이다.

35) http://www.lapdonline.org/inside_the_lapd/content_basic_view/836

36) http://www.elyriapolice.org/police_rec.html

37) <http://www8.cao.go.jp/intro/kunsho/index.html>

38) 입법기관으로서 각종 제도의 건의를 담당한 기관.

작하게 되었다. 이후 1987년에 국화장, 1889년에 서보장과 보관장, 1937년에 문화훈장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포장은, 1882년 12월 『포장조례』(태정관포고 제63호)의 공포로 홍수포장, 녹수포장, 남수포장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1919년에 감수포장, 1955년에 황수포장과 자수포장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훈장·포장의 수여는 원칙으로서 년 2회, 봄은 4월 29일, 가을은 11월 3일에 춘추서훈 및 포장(홍수포장, 녹수포장, 황수포장, 자수포장, 남수포장의 5종류)이 수여되며, 현저하게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정려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자위대, 경찰, 소방 등)이 춘추서훈과 같은 날 수여되어 있다. 일본훈장의 종류와 수여대상자, 일본포장의 종류와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5-1> 일본 훈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

종 류		수 여 대 상	
대훈위국화장 大勳位菊花章 대훈위국화장장식 대훈위국화대수장		옥일대수장 또는 서보대수장이 수여될 만할 공로보다 뛰어난 공로가 있는 자	
동화대수장 桐花大綬章			
옥일장 旭日章 옥일대수장 옥일중광장 옥일중수장 옥일소수장 옥일쌍광장 옥일단광장	서보장 瑞宝章 서보대수장 서보중광장서보중수장 서보소수장 서보쌍광장 서보단광장	국가 또는 공공에 공로가 있는 자	
		옥일장 공적의 내용에 착안하여, 현저한 공적을 올린 자	서보장 공무 등에 오랜 세월 종사하여 성적을 올린 자
문화훈장 文化勳章		문화의 발달에 관하여 특별히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자료: <http://www8.cao.go.jp/intro/kunsho/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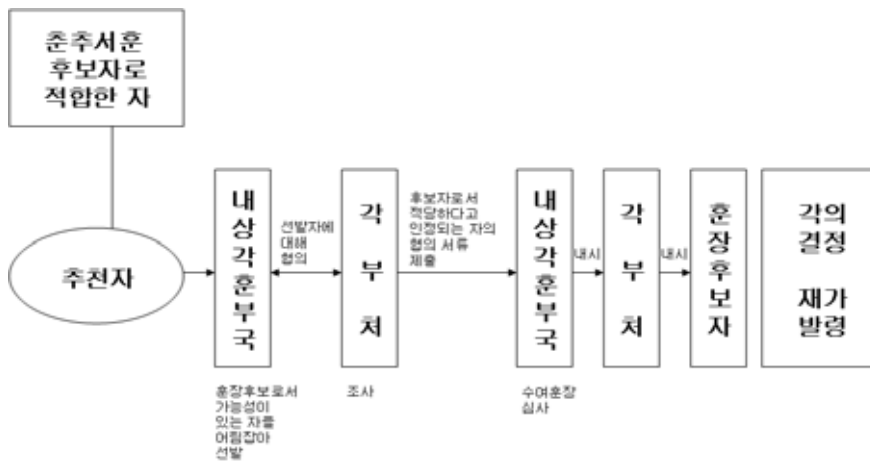
<표 5-2> 일본 포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

종 류	수 여 대 상
홍수포장 紅綬褒章	자기의 위난을 뒤 돌아보지 않고 인명의 구조에 힘쓴 자
녹수포장 綠綬褒章	스스로 자진해서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여 덕행이 현저한 자
황수포장 黃綬褒章	업무에 정려하여 대중의 모범이 되는 자
자수포장 紫綬褒章	학술·예술상의 발명, 개량, 창작에 관해 공적이 현저한 자
남수포장 藍綬褒章	공중의 이익을 도모한 자 또는 공동사무에 힘쓴 자
감수포장 紺綬褒章	공익을 위해 사재를 기부한 자 등
식판 飾版	이미 포장이 수여된 자에게 다시 한번 동종의 포장을 수여해야 할 경우

자료: <http://www8.cao.go.jp/intro/kunsho/index.html>

2. 일본서훈제도 절차

<그림 5-1> 춘추서훈 과정도



자료: <http://www8.cao.go.jp/intro/kunsho/index.html> 내용 정리

3. 일본의 정부포상제도

가. 훈 장

춘추서훈은 매년 2회, 봄 4월 29일, 가을 11월 3일자로 수여되고 있으며, 후보자는 영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각총리대신이 결정한『춘추서훈 후보자추천 요강』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장이 추천한다. 내각부 상훈국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초안을 정리한 그 다음에 내각 관방장관이 주재하는 훈장수여등심사회의의 논의를 거쳐 내각회의에 자문을 하여 수상자가 결정된다.

경찰을 비롯한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은 춘추서훈과는 별도로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정려한 자에 대한 서훈으로서, 2003년 11월부터 수여되고 있다. 후보자는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수상자의 선발절차에 대하여』(내각회의 양해)에 근거하여 관계 장관이 추천한다. 추천된 자에 대하여 내각부 상훈국에서 심사를 하고 초안을 정리한 후, 내각회의의 자문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춘추서훈과 같이 매년 4월 29일과 11월 3일자로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훈장을 관계 장관이 전달하며, 훈장을 착용하고 배우자 동반으로 일본 천황을 만난다.

경찰관, 자위관 등 현저하게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정려³⁹⁾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일반공무원, 민간인과 함께 춘추서훈중에 서훈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저하게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정려하는 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수가 극히 많으나 춘추서훈으로는 수상자 인원수가 자체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수상자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져 오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상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 포 장

자기의 위난(危難)을 뒤 돌아보지 않고 인명의 구조에 힘쓴 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수포장, 사회봉사 활동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녹수포장, 한 길로만 업무에 정려해 대중의 모범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황수포장, 학술·예술·기술 개발 등의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수포장, 교육·의료·사회 복지·산업진흥 등의 분

39) 정려(精勵):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행(行)함.

야에서 공중의 이익을 도모한 자 또는 보호사, 민생·아동위원, 조정위원 등의 사무에 힘쓴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남수포장이 있다.⁴⁰⁾

다.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수상자의 선발절차에 대하여⁴¹⁾

일본상훈제도에서 경찰과 관련있는 부분은 위험업무종사자에 대한 내용이다. 위험업무종사자는 자위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위험업무종사자의 서훈수상 선발절차에 관한 절차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영전제도의 개혁에 대해서”(2002년 8월 7일 내각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춘추서훈과는 별도로 실시하는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에 있어서 수여되는 훈장(杯를 포함. 이하 동일)의 수상자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에 있어서 수여되는 훈장의 수상자 예정 인원은 매회 대략 3,600명으로 하고, 매년 4월 29일과 11월 3일에 발령하는 것으로 한다.
2. 총무장관, 법무장관, 국토교통장관,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및 방위청 장관 (이하 “관계 장관”이라고 함)은 현저하게 위험성의 높은 업무에 정려한 자 중에서 국가 또는 공공에 대한 공로가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 매회 위험업무종사자서훈 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 함)로서 내각 총리대신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3. 관계 장관이 2.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그 공로가 되는 활동이 일본 헌법 시행일 전에 끝난 자 및 1964년 이후의 춘추서훈 또는 2003년 이후의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에 의하여 훈장을 이미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2.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문서로 내각부 상훈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5. 4.에 규정한 협의에 관한 서류 제출은, 4월 발령의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은 전년도

40) 기타, 공익을 위해서 사재(500만엔 이상)를 기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수포장과, 포장조례에 의해 표창되어야 할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에게 배 또는 포장증을 수여하는 유족 追賞이 있다.

41) 2003년 5월 20일 내각회의 양해.

10월 15일까지 11월 발령의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은 당해년도 4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03년 11월에 발령하는 위험업무종사자 훈장 수여에 관련된 서류제출은 2003년 5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6. 내각 총리대신은 2.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위험업무종사자 서훈의 훈장수여에 대해서 내각회의의 결정을 구한다.

4. 일본경찰포상제도⁴²⁾

가. 경찰훈공장(警察勳功章)⁴³⁾

경찰훈공장은 경찰청의 경찰표창 규칙 제2조 및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 발군의 공로가 있어, 일반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경찰훈공장은 표창 중(안)에서는 최상위에 해당되는 것이다.⁴⁴⁾

수상자가 금고이상의 형,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때 반납하게 하고 있다. 경찰공로장은 수상자 본인에 한하여 종신포용 할 수 있으며, 본인이 타계했을 경우 유족이 경찰훈공장을 보관할 수 있다.

나. 경찰공로장(警察功勞章)

경찰공로장은 경찰청의 경찰표창 규칙 제2조 및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되고 있어, 뛰어난 공로가 있어 일반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받는 경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⁴⁵⁾ 경찰 표창 중(안)에서는 경찰훈공장 다음의 훈격을 갖는 상훈이다.

수상자가 금고이상의 형,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때 반납하게 하며, 경찰의 신분 에 맞지 않는 비행이 있었을 경우에도 반납하게 하고 있다. 경찰공로장은 수상자 본인에

42) <http://law.e-gov.go.jp/htmldata/S29/S29F30301000014.htm>

43) 경찰훈공장(警察勳功章) 또는 경찰훈공상(警察勳功常)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경찰포상규칙에 근거하여 상(常)대신에 장(章)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

44) 경찰청 장관표창의 최고등급의 상.

45)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도 78kg급에 출전에 금메달을 획득한 순사 부장(당시) 안노 노리코에게 경찰공로장이 수상.

한하여 종신포용 할 수 있고, 본인이 타계했을 경우 유족이 경찰공로장을 보관할 수 있다.

다. 경찰공적장(警察功績章)

경찰공적장은 경찰청의 경찰표창 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2, 3, 제10조, 제11조에 규정,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직원에게 수여하는 표창이다. 경찰훈공장, 경찰공로장, 경찰협력장(警察協力章)⁴⁶⁾ 같이 경찰청 장관이 표창하는 상중에 하나이지만, 경찰공적장은 경시총감을 시작해 각도부현 경찰본부장, 경찰청의 지방기관장, 황궁 경찰 본부장, 그 외 경찰청 간부에게 수여되는 표창이다.

수상자가 금고이상의 형,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때 반납하게 하며, 경찰의 신분 에 맞지 않는 비행이 있었을 경우에도 반납하게 하고 있다. 경찰공로장은 수상자 본인에 한하여 종신포용 할 수 있으며, 본인이 타계했을 경우에는 유족이 경찰공적장을 보관할 수 있다.

라. 경찰찬사(警察賞詞)

경찰직원으로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마. 경찰상사(警察賞狀)

경찰 직무 집행상, 현저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주어지는 상이다.

바. 경찰상예(警察賞譽)

경찰직원으로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부서에 주어지는 상이다.

46)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피의자의 체포, 인명 구조, 수화재 그 외의 재해 또는 이변에 있어서 의 경계, 방호, 혹은 구호, 경찰 또는 경찰직원에게 대한 협력 등 위 사항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수여한다 상으로 일종의 감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 경시총감상(警視總監賞)(서장상, 과장상: 署長賞, 課長賞)

경찰서 단위로 경찰직원으로서 사건 해결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서장상, 과장상이라고도 불려진다.

아. 경시총감 특별상(警視總監特別賞)

경찰서 단위로 경찰직원으로서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자. 내각총리대신 특별 포상(內閣總理大臣特別褒賞)

경찰직원으로 폭행범에 의하여 위해를 입었을 때에, 사망 또는 신체장애가 남았을 경우로, 특히 포상해야 한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5. 일본경찰포상규칙⁴⁷⁾

경찰 표창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규칙의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경찰법 (1954년 법률 제162호)제70조의 규정에 근거, 경찰직원의 표창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의 종류)

제2조 표창은 다음과 같다.

- 1) 경찰훈공장

47) <http://law.e-gov.go.jp/htmldata/S29/S29F30301000014.html>

1954년 8월 6일 국가 공안 위원회 규칙 제 14호, 최종 개정 : 2006년 9월 29일 국가 공안 위원회 규칙 제26호.

- 2) 경찰공로장
 - 3) 경찰공적장
 - 4) 상사 賞詞(공적 등을 칭찬하는 말)
 - 5) 상장
 - 6) 상예(칭찬)
 - 7) 경찰협력장
 - 8) 감사장
2. 경찰훈공장은, 경찰직원으로서 특히 발군의 공로가 있고, 일반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여한다.
 3. 경찰공로장은, 경찰직원으로서 발군의 공로가 있어 일반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여한다.
 4. 경찰공적장은, 경찰직원으로서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여한다.
 5. 상사는, 경찰직원으로서 매우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여한다.
 6. 상장은, 경찰 직무 수행상 현저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수여한다.
 7. 상예는, 경찰직원으로서 공로가 있고, 또는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업적이 우수하다라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수여한다.
 8. 경찰협력장은, 다음의 각 호에 열거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수여한다.
 - 1)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 2) 피의자의 체포
 - 3) 인명 구조
 - 4) 수재, 화재 그 외의 재해 또는 이변에 있어서의 경계, 방호, 혹은 구호
 - 5) 앞의 4개항 이외, 경찰 또는 경찰직원에 대한 협력
 9. 감사장은, 전항 각 호 사항에 대해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 이외의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 수여한다.

(부상)

제3조 전조(제2조)의 표창에는, 상급 그 외의 부상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상술급)

제4조 경찰직원이, 위해를 당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는 일을 예측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되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위해 또는 재해를 입고, 그 때문에 장해 상태가 되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 제2조 제2항부터 제 5 항까지 해당되는 경찰 훈공장, 경찰 공로장, 경찰 공적장 또는 상사가 수여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의 종류 등)

제 5 조 전조의 상급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제1에 정하는 대로로 한다.

(순직자 특별상급)

제 5 조의 2 전 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경찰직원이 상급의 명령을 받아 특히 생명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출동해, 위해를 당할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돌아보는 일 없이 그 직무를 수행했던 것에 기준을 두고 위해를 입어 사망,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찰 훈공장이 수여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3, 000만엔 이하(해당 경찰직원이 경찰청의 직원 또는 지방 경무관(경찰법 제 5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지방 경무관 가운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유족이 해당 사안에 관계되어 도도부현(시군구)으로부터 금액이 교부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별표 제 1에 대해 같다.)인 경우에 있어서는, 6, 000만엔 이하)의 순직자 특별상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순직자 특별상급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제 1 비고 7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창 수여자)

제6조 경찰 훈공장, 경찰 공로장 및 경찰 협력장은, 경찰청 장관이 수여한다.

2. 경찰 공적장, 상사, 상장 및 상예는, 경찰청 장관, 항공 경찰 본부장, 경찰청의 지방기관장(해당 관할구 경찰국장), 동경도 경찰정보통신부장, 북해도(홋카이도) 경찰정보통신부장, 경시총감, 도부현(시군구) 경찰 본부장 또는 방면(해당 지역) 본부장이 소속 부서의 경찰직원 또는 소속의 부서에 대해서 수여한다.
3. 경찰 공적장, 상사 및 상장은, 경찰청 장관 또는 경찰청의 지방(관할구역)기관장이 소속 부서의 경찰직원 이외의 경찰직원 또는 소속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해서 수여할 수 있다.
4. 감사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수여한다.
5. 상금 및 순직자 특별상금은, 경찰청 장관이 부여한다.

(사망 또는 퇴직시 표창)

제7조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표창전에 사망 또는 퇴직했을 때는, 생전(생존 당시) 또는 퇴직한 날로 소급하여 표창한다.

(순직자상금 등의 급부)

제8조 순직자상금 또는 순직자 특별상금은, 경찰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그 유족의 범위 및 지급을 받는 순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 공무원 재해 보상법(1951년 법률 제191호) 제17조 5 및 제17조의 6 제2항의 규정의 사례에 의한다.

(경찰 훈공장 등의 착용 등)

제9조 경찰 훈공장, 경찰 공로장 및 경찰 공적장은, 본인에 한해서는 종신 착용할 수 있고, 그 유족은, 이것을 보존할 수 있다.

2. 경찰 훈공장, 경찰 공로장 및 경찰 공적장은, 상의의 우측 가슴에 부착하며, 경찰관 또는 항공 호위관이 제복을 착용할 때는, 항상 이것을 부착한다. 다만, 복무상 지장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3. 1910년 칙령 제438호에 의해 경찰관리 및 소방 관리의 공로 기장을, 1944년 칙령 제298호에 의해 경찰 공로기장 혹은 경찰 공적장을, 1948년 국가 공안 위원회 규칙 제5호에 의해 경찰 공로장 혹은 경찰 공적장을, 또는 시읍면(시군구

면) 공안위원회 혹은 특별구 공안 위원회가 정하는데 것에 의해 경찰 공로장 혹은 경찰 공적장이 수여된 사람은, 각각, 전항에 준하고 이것을 붙일 수 있다.

(경찰 훈공장등의 반납 등)

제10조 경찰 훈공장, 경찰 공로장 또는 경찰 공적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반납시키며, 경찰 직원에 어울리지 않는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이것을 착용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또는 이것을 반납시킬 수 있다.

(경찰 훈공장 등의 형상, 제식)

제11조 경찰 훈공장, 경찰 공로장, 경찰 공적장 및 경찰 협력장의 형상 및 제식은, 별표 제2의 방법에 의한다.

(잡칙)

제12조 전 11조에 정해진 것 이외 , 경찰직원의 표창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장관이 정한다.

6. 현민경찰관(県民警察官)⁴⁸⁾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현민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칭찬을 받는 경찰관 또는 중대사건의 검거 등 경찰활동에 막대한 공로가 있는 경찰관을 현민의 경찰관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현민경찰관은 명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현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다.⁴⁹⁾

48) 이시카와 현을 기준으로 설명

http://www.police.kanazawa.ishikawa.jp/keimu_bu/kousou/jouhoukokai/kansatu/kansatu19711209.pdf

49) 일본행정구역은 도(都)1도(道)2부(府)43현(縣)으로 되어 있다.

가. 선출기준

선출기준은 경찰관으로서 인격, 식견 모두 뛰어나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어, 실로 「현민의 경찰관」으로서 표창을 받기에 어울린 사람을 선출한다. 다만, 이전에 「현민의 경찰관」으로서 표창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 (1) 현민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에 의해, 감사와 상찬(讚)을 받은 것
- (2) 용감한 행동 혹은 기민한 조치에 의해서 인명을 구조한 것
- (3) 중대한 사건의 범인 검거, 또는 범인 검거에 공적이 있던 것
- (4) 천재지변, 그 외의 이변에 있어서의 경계 방호, 또는 구호 활동에 임하고, 공적이 있던 것
- (5) 장기간, 헌신적으로 교통 지도 단속, 또는 방범 활동에 종사해, 교통사고방지 및 지역방범활동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

나. 수상절차 내용

소속 기관장은 전년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사이에 있어서 선출기준에 해당하는 1명을 골라 11월 10일까지 본부장에게 추천한다. 본부장은 추천인 중 3명을 골라 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수상인원은 원칙적으로 1명으로 한다. 표창의 시기는 12월 상순으로 하며, 표창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현민의 경찰관은 공적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 연령, 근무 연수 등에 제한을 마련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창의 취지와 성격상 직접 현민과 접촉하는 순사부장이 하의 일선 경찰관에서 선발하며, 공적이 동등한 것에 한하여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다.

다. 히로시마 현민경찰관 표창

히로시마에서는 산케이신문사와 신히로시마 TV가 현민경찰관 표창을 주관하고 있다. 다른 현에서도 특정 방송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민경찰관상을 주관하고 있다. 다음은 현민의 경찰 표창식과 관련한 관계부서의 홈페이지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히로시마·『현민의 경찰관』표창식- 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착실하게 활동을 계속하는 경찰관에 주어지는 『히로시마현민의 경찰관』의 표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표창된 것은, 히로시마서 경찰서 헌병과의 아오키 세이지 경부보입니다. 『현민의 경찰관』은, 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착실하게 활동을 계속하는 경찰관을 매년 표창하는 제도로 산케이신문사와 신히로시마 TV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오키씨는, 1969년에 경찰관이 되어, 37년 남짓의 재직 기간의 대부분을 생활 안전부문과 형사부문에서 활약해 치안 유지에 공헌해 왔습니다. 현재는 히로시마 서경찰서 경찰 안전 상담계로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상담에 대응해, 주민의 신뢰도가 높아 『현민의 경찰관』으로 선택되었습니다.”⁵⁰⁾

라. 석천현(이시가와겐) 현민경찰관 표창후보자의 추천기준⁵¹⁾

올해 1월 발족한 석천현 경찰관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사업의 한가지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석천현 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칭찬을 받은 경찰관 또는 중대사건의 범인검거 등 경찰활동에 큰 공로가 있었던 경찰관을 [현민 경찰관]으로서 표창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소속직원들이 상의 취지를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석천현의 현민경찰관은 다음의 추천기준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1) 선고(선출)기준

경찰관으로서 인격, 식견과 함께 뛰어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진정으로 [현민 경찰관]으로서 표창을 받는 것이 적합한 사람.

단, 예전에 [현민 경찰관]으로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외.

- (1) 주민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에 기인하여, 감사와 상찬을 받은 사항
- (2) 용감한 행동 또는 기민한 조치에 의해 인명을 구조한 사항
- (3) 중대한 사건의 범인검거, 또는 범인검거에 현저한 공적인 있는 사항
- (4) 천재지변, 기타 사건에 있어 경계방호, 또는 보호활동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항

50) <http://seigi001.blog24.fc2.com/blog-category-1.html>

51) 1971년 12월 9일 발비 제315호 발무 제1123호.

- (5) 장기간, 헌신적으로 교통지도단속, 또는 방법활동에 종사하고, 교통사고방지, 지역 방법활동에 큰 공헌을 한 사항

2) 추천절차

소속 기관장은 전년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사이에 있어 상기 선별기준해당자 1명을 선출하여 별첨양식에 따라 11월 10일까지 본부장으로 추천할 것. 본부장은, 피상신자 가운데서 3명을 선별, 친목회 회장에게 추천한다.

3) 표창인원

원칙적으로는 1명이며, 본부장의 추천을 기준으로 친목회에서 결정한다.

4) 표창의 시기 및 방법

12월 초순, 친목회 사무국이 있는 가네자와(금택) 상공회의소에서 표창식을 거행하며, 동회 회장으로부터 표창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5) 기타

표창장은 전년 11월부터 , 당해연도 10월말까지 1년 동안 구체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특히 계급, 연령, 근무년수 등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이 표창의 취지, 성격상 가능하면,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순사부장 이하의 제일선 경찰관중에서 선별하고, 공적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7. 일본 상훈제도의 전개방향

일본헌법에서 영전의 수여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천황이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국사행위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영전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 오랜 세월 공로, 또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을 표창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는 동서를 막론하고 널리 세계 각국 공통으로 존재하는 제도이다.⁵²⁾ 또한 훈장은 국민의 방일 등의 계기에 서로 교환되거나 일본에 대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등 국제적인 우호친선을 깊게 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

일본 훈장제도는 1876년 유럽 선진국의 훈장제도를 본 따 창설되었고, 창설 당시는 군인·관리를 중심으로 운용되었지만, 전후 1964년에 생존자에 대한 서훈을 재개하면서 그 운용이 대폭 바뀌어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공로가 있는 자를 폭넓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연 2회 춘추(4월,11월)서훈을 통하여 28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수여되었다.

경찰관, 자위관 등은 치안, 방위 등 사회·공공을 위해서 신명을 걸고 봉사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특수한 직무이며, 다른 일반공무원이나 민간인과는 유형을 달리하므로, 이들과는 다른 서훈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경찰관 등 생명신체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빨리 서훈하도록 하는 방안과 춘추서훈을 2회로 하는 것이 아닌 수시 수상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되고 있다.

경찰관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춘추서훈 중에는 수장자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 평균연령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 건강한 고령자에게는 수상을 계기로 하여 지금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한 공적을 치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으로, 이들에 대한 서훈을 춘추서훈과는 별도로 서훈하여 수상자 인원수를 늘리고 수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절 영 국⁵³⁾

1. 개 요

영국에서 서훈은 1년에 두 차례, 여왕의 공식 생일이 있는 6월과 새해에 수여 하고 있

52) 일본정부가 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을 얻을 수 있었던 98개국중 91개국에 훈장제도가 존재하였음.

53) <http://www.honours.gov.uk/>

다. 통상적으로 1,350명가량의 서훈 후보자들이 총리상 부문, 외교 부문, 군대 부문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결정된다.

서훈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는 추천서 양식에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접수시키면 전문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리실에서 검토하여, 서훈 후보자로 선정된 개인들은 최종 상훈수여자 리스트가 여왕의 정식 승인 절차를 밟기 전에 서훈 수여를 수락한다는 의사표시 후 서훈절차가 진행 된다. 영국의 상훈제도는 영국 내각 사무처 의전 사무국(the Cabinet Office Ceremonial Secretariat)에 의하여 관리된다.

영국의 훈장제도는 약 650여 년 전부터 발전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중에 하나로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2. 서훈의 종류 (The Orders of Chivalry)

가. 가터 훈장 (The Most Noble Order of the Garter)

가터 훈장(The Garter)은 영국에서 민간인과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이다. 1348년에 에드워드 3세가 창설하였다. 가터 훈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불에 타 없어져서 훈장을 제정한 원래 목적, 문장(紋章)의 의미, 제명(題銘)의 기원 등은 불명확하다.

나. 시슬훈장 (영경귀훈장: The Most Ancient and Noble Order of the Thistle)

시슬(Thistle:영경귀) 훈장은 스코트랜드의 기사훈장으로써 그 기원은 공식적인 1687년 영국 왕 제임스 2세(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7세)가 제정한 것보다 더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다. 영경귀 훈장은 가터 훈장 바로 아래 서열이며, 이 두 훈장은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고 명예로운 훈장으로 간주된다.

다. 메리트 훈장 (The Order of Merit)

1902년 에드워드 7세가 제정한 영국의 명예제도. 특출한 무공(武功)을 세웠거나 과

학·예술·문학 등 문화 전반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로얄 빅토리안 훈장 (The Royal Victorian Order)

1896년 제정된 훈장. 왕족에게 로얄 빅토리아 메달의 형태로 주어진다.

마. 바스훈장 (The Most Honourable Order of the Bath)

‘GCB,KCB/DCB,CB’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저한 업적을 세운 군인과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바. 성마이클·성조지 훈장 (The Order of St Michael and St George)

영국 국왕 조지 4세가 된 섭정왕자가 1814년 이오니아 제도와 몰타가 영국의 보호령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18년 제정되었다. 훈장은 주로 영국의 식민지 사업에 종사하는 관리, 해외근무 장교 및 외교관, 영연방내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사. 영국제국훈장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영국에 헌신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1933년 이후 수여자가 없다.

아. Other Awards

- The Order of the Companions of Honour: 특정분야에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공헌, 6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Imperial Service Order: 공무원들을 위해 1902년 하나의 레벨과 메달로 만들어졌다. 25년간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 The Distinguished Service Order은 1886년에 만들어졌고 하나의 레벨로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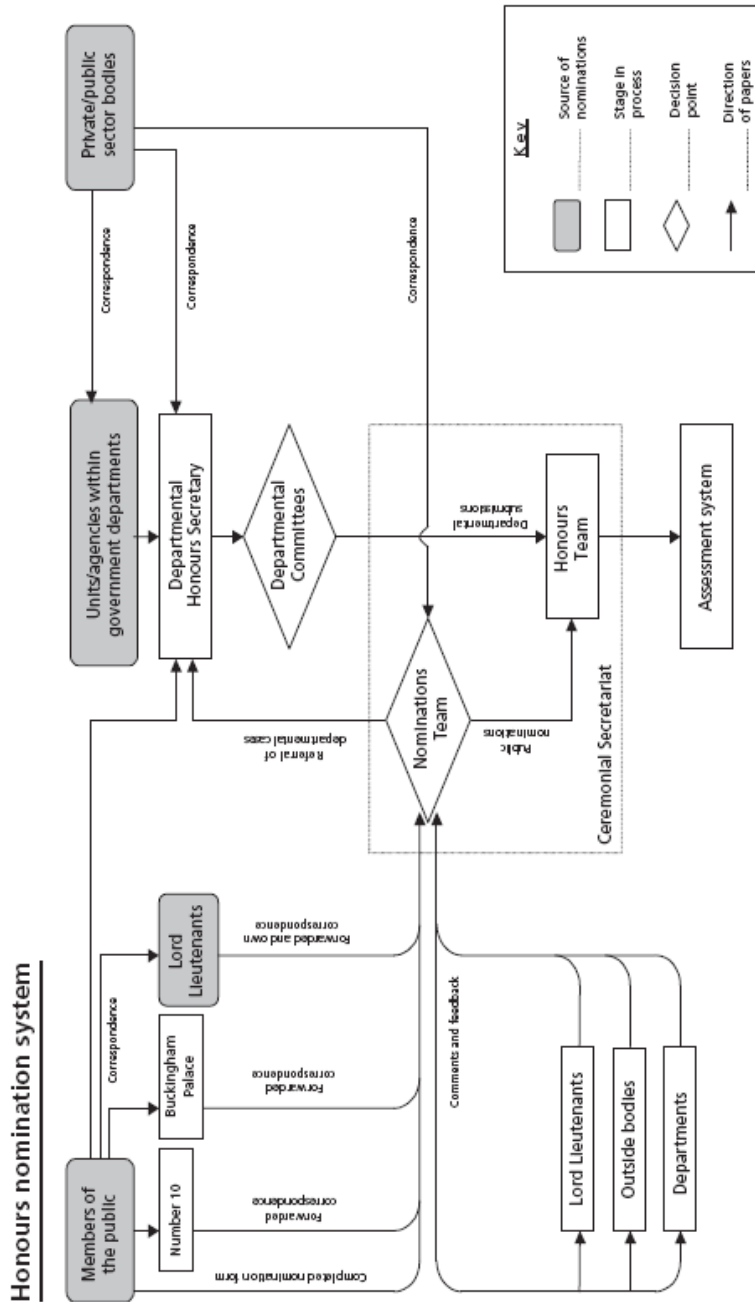
있음. 뛰어난 용맹과 리더십을 발휘한 군장교에게 수여하고 있다.

3. 서훈의 제도의 운영

상훈담당 부서는 내각사무처 의전사무국(the Cabinet Office Ceremonial Secretariat)이며, 포상 규모는 연간 총 3,000명으로 매회 1,500명씩 포상하고 있다. 포상결정 절차는 일반시민 또는 정부 부처의 추천 → 내각의전국의 추천서류심사 → 소위원회 평가 → 본위원회(송부) → 내각사무처장관(송부) → 총리(상신) → 여왕(비공식 승인) → 후보자(수락여부결정) → 여왕(공식승인)의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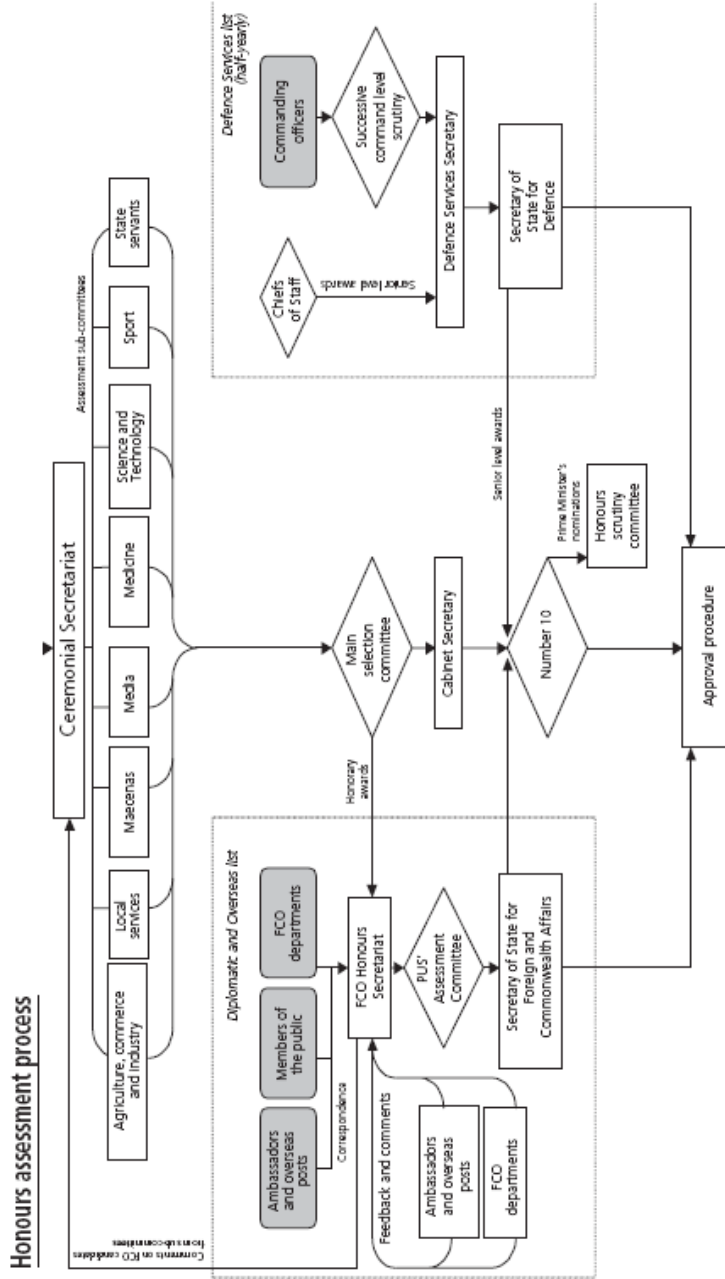
심사위원회 구성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The eight specialist sub-committees; 대다수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됨)와 본위원회(The main Honours Committee; 소위원회위원장 8인, 국방총장, 외교부 사무차관, 여타 사무차관으로 구성됨. 위원장은 내각사무처 장관)로 구성된다.

<그림 5-2> 수상자 지명 과정⁵⁴⁾



54) <http://www.honours.gov.uk/>

<그림 5-3> 훈장 평가 과정 55)



55) <http://www.honours.gov.uk/>

<그림 5-4> 훈장 수상자 승인 과정⁵⁶⁾

Honours approval procedures



56) <http://www.honours.gov.uk/>

4. Bravery Awards의 개요

Bravery Awards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위험 가운데 맡기면서 국민의 한 생명을 구하거나 구하려고 시도한 개인이 행한 특별한 행동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또한 범죄의 예방, 혹은 위험한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체포하기를 시도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자신을 돌보지 않은 용감한 행동에 대하여 포상하는 상이다.

비록 대부분의 추천들이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누구라도 Bravery Awards의 대상으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모든 추천들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성립된 기준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례자체의 가치로 평가된다. 비록 상들의 명단은 보통 한해에 두 번 발행되기는 하지만 상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상들은 언제라도 만들어 질 수 있다. 상을 위해서, The Ceremonial Secretariat는 추천자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 내각 총리는 그것들의 승인을 위해서 국왕에게 제시하고 있다.

가. Bravery Award의 유형

다른 명예와 훈장들처럼, Bravery Award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왔고,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몇 가지 종류의 Bravery Award가 있다. 이러한 상들은 개입된 용기의 정도를 분간하기 위해서 다른 수준으로 체계화 되어있다.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George Cross

이 상은 아주 뛰어나게 영웅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 수여 된다. 이것은 사후(事後)에 수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국의 국민에 국한된다. 상을 수여받은 사람은 이름 뒤에 GC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다.

○ George Medal

이 상은 극도로 높은 등급의 용기(용맹)에 대해서 수여된다. 이것은 사후(死後)에 수여될 수도 있고 영국 국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수여자는 그들의 이름 뒤에 GM이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다.

○ The Queen's Gallantry Medal

이 상은 높은 등급의 용맹에 대해서 수여된다. 이것은 사후(死後)에 수여될 수도 있고, 영국 국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여자는 이름 뒤에 QGM이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상들은 위에서 말한 기준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고 국가적인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용기(용맹)에 대해서 수여된다. 이 두 가지 상은 사후(死後)에 수여될 수도 있고, 영국 국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상들은 이름 뒤에 특별한 문자를 붙이지는 않는다.

<그림 5-5> Bravery Award 메달사진

George Cross	George Medal	The Queen's Gallantry Medal
		

가. Bravery Award 추천

추천은 대개 경찰과 같은 긴급한 서비스 중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또한 공공의 구성원들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추천은 Office of The Ceremonial Secretariat에 제출되기 전에 관련된 정부부처에 전달되고 고려된다.

나. 평가절차

The Ceremonial Secretariat는 상을 위한 사례를 심사숙고를 위해서 the George Cross 위원회(GCC)에 맡길 것이다. 만약 위원회가 GCC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상을 승인한다면, 내각총리를 거쳐서 승인을 위해서 국왕에게 제출한다.

다. 공 표

The Ceremonial Secretariat는 런던신문에 상을 공표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용기있는 행동의 세부사항들이 주어진 지면에 열거되어 공표한다.

라. London Gazette에 실린 Bravery Awards의 내용⁵⁷⁾

Honours and Awards

CENTRAL CHANCERY OF
THE ORDERS OF KNIGHTHOOD
St James's Palace, London SW1
7 February 2006

The QUEEN has been graciously pleased to approve the publication in *The London Gazette* of the names of those shown below as having received an expression of Commendation for Bravery.

Queen's Commendation for Bravery

Geoffrey Arnold HINCE. Constable, Greater Manchester Police.

For his actions in tackling two robbers during a raid on a Post Office in Salford.
In October 2004 in the middle of the afternoon, Constable Hince was off-duty and driving in Salford when he noticed two men wearing balaclavas, enter a Post Office. One man was carrying a machete and the second man held a pick-axe. Constable Hince stopped his car and ran into the Post Office shouting "Police". There were two members of staff in the shop at the time. He ran towards one man and punched him in the face, knocking him down. The second man moved behind a screen, acting in a threatening manner and then attacked Constable Hince injuring him in several places on his arm and hand. The two employees joined in the fracas. A struggle ensued and the man fell backwards on to the floor. He was held down by Constable Hince, with the help of the employees. The other man joined in the affray. Constable Hince kicked

out at him and he dropped the pick-axe and fled. The first robber was restrained for a few minutes until uniformed officers arrived at the scene. The robber was sentenced to six and a half years and a further 12 months on recall of licence.

Nicholas Peter SCOTT. Officer, HM Prison Lincoln.

For going to the rescue of a colleague held hostage in a prison riot.

In October 2002 Officer Scott was on duty when a serious disturbance broke out in Lincoln Prison. During a prisoner association period in the evening, an officer was attacked and pushed into a cell by a group of prisoners. He was hit and sustained wounds to his head. Officer Scott heard the sound of the attack and ran to the cell, whilst a colleague raised the alarm. Officer Scott drew his truncheon and opened the cell door to go to the aid of his stricken colleague. On entering the cell he was confronted by a group of about six prisoners wearing balaclavas, armed with makeshift weapons which they had used on the hostage. A prisoner armed with a table leg confronted him, a fight ensued and Officer Scott was forced to retreat. He backed down the wing landing, followed by the attacking prisoner and at one point went down and was injured. The prisoner returned to his accomplices and they all left the cell, allowing the officer held hostage and Officer Scott to escape to safety. The riot was not quelled until the early hours of the next day. Twenty-one prisoners received sentences totalling 98 years.

57) Number 57894, Tuesday, 7. February, 2006. <http://www.london-gazette.co.uk>.

바. 추가적인 상들 (Further awards)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상들은 만약 한번 상을 수상한 이후에 용기 있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면 한 번 이상 받을 수 있다. 여러 번 수상할 경우에 GC, GM, QGM의 경우에는 리본에 선장(線章)이 추가된다. Queen's Commendation을 수여하는 사람은 추가로 상장을 받을 수 있다.

제4절 미 국

1. 미국 상훈제도의 개요

미국의 개인상훈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① 데커레이션(decorations)⁵⁸⁾, ② 모범기장(Good Conduct Medal)¹⁴⁾, ③ 근무기장(service medal), ④ 근무약장(service ribbons), ⑤ 휘장 및 부가품(附加品)(badges and tabs), 그리고 ⑥ 증서(certificates)와 서한(letters)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표창제도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훈·포장과 표창을 포괄하는 개념인 데커레이션(decorations)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의 훈장은 계급에 따라 등급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미국의 데커레이션(decorations)은 등급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2. Medal of Valor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는 법무장관에 의해서 증언되고, 상훈 위원회에 의해서 추천된 public safety officers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이다. 국가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범죄자와 청소년 정의 시스템

58) 미국은 우리의 표창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으며, 'medal' 형태의 'decoration' 위주로 되어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데커레이션을 훈장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우리의 훈·포장 및 표창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훈장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medal'은 훈·포장, 기장 등 메달 형태로 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고자 한다.

(justice system)을 향상시키기, 범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하고, 상황을 진술하기, 범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The Office of Justice Programs이 실시되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가 수여되고 있다.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는 public safety officer에 의해서 행해진 용기(Valor)에 대한 국가 최고의 상이다.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는 법무장관에 의해서 증언되고, 상훈위원회에 의해서 추천된 public safety officers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이다. Public safety officers들은 특별한 용기, 비범한 결단력,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 행동의 특별한 민첩함, 자신의 개인적인 안정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야 하고, 의무(the call of duty)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행동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 public safety officers에게 수여한다.

가.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 Act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 법은 2001년 5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국가 최고의 상으로서 The Public Safety Medal of Valor는 public safety officer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에 관련된 법안은 H.R.802이다.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는 매년 5월 31일에서 7월 31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추천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다.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는 대부분의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상훈수여자 및 상훈수여자에 대한 공적 문의 가능하며, 상훈 수상자 추천 및 지원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⁵⁹⁾ 추천은 개인 또는 팀당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는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추천인은 반드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추천양식을 준비해야 한다.⁶⁰⁾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의 수상대상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59) <http://www.ojp.usdoj.gov/medalofvalor/>

60)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후보로 추천한다고 하여도, 모든 멤버들의 공적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하는 공무원(public safety officer)으로, 사법, 소방, 의료서비스, 주 경찰, 교정기관 등이 대상이다.

나. Medal of Valor Review Board

2002년 1월 14일에 The Medal of Valor Review Board 현장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서명되었다. 법률이 요구한 것처럼 11명의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 상원의 다수당과 소수당의 당수, 하원의장과 소수당의 당수에 의해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the public safety 공동체의 대표자들과 지명자와 추천자 개인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반 국민(general public)을 포괄한다.

다. 지명(Nominations)

지원은 반드시 권위있는 기관 또는 청에 의하여 제출되도록 해야 하며, 지원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청에 의하여 지명되어 한다. The Medal of Valor의 지원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라. Medal of Valor에 관한 법(Act)⁶¹⁾

H.R.802

미국 의회의 107번째 의회 제 1회

2001년 1월 3일 수요일 워싱턴에서 개최

법(An Act)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를 승인하고,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미국의 의회에 모인 상원과 하원 의원에 의해서 제정되었음.

SECTION 1. SHORT TITLE.

이 법은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 Act of 2001 라고 불린다.

61) <http://www.ojp.usdoj.gov/medalofvalor/valor.htm>

SEC. 2. 메달의 권한 (AUTHORIZATION OF MEDAL)

2001년 9월 1일 이후 상훈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법무장관에 의해서 증명된(cited) 의무를 넘어서는 비범한 용기를 보인 a public safety officer에게 리본과 부속물들로 이루어진 메달을 의회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상을 수여한다. The Public Safety Medal of Valor는 public safety officer에 의한 용기(Valor)에 대한 국가 최고의 상이 될 것이다.

SEC. 3. MEDAL OF VALOR 위원회

- (a) 위원회의 설립- 상훈위원회는 분과에 따라서 임명된 11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b) 위원회의 업무는 이법에 따라서 수행될 것이다.

(b) MEMBERSHIP-

- (1) MEMBERS -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public safety의 영역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훈련된 지식 있는 개인들이 될 것이고

- (A) 2명은 상원의 다수당 리더에 의해서 임명된다.
(B) 2명은 상원의 소수당 리더에 의해서 임명된다.
(C) 2명은 하원의장에 의해서 임명된다.
(D) 2명은 하원의 소수당 리더에 의해서 임명된다.

- (E) 3명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한명은 소방활동(fire fighting)의 경험자, 한명은 사법(law enforcement) 경험자, 한명은 긴급서비스의 (emergency services) 경험자를 임명한다.

- (2) 임기 - 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3) 공석 - 위원회의 위원의 공석은 위원회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자리는 원래의 임명과 같은 방법으로 채워져야 한다.

(4) 위원회의 운영

- (A) 의장 -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B) 회의 - 위원회는 위원회의 첫 회의를 원래 있던 위원회 그룹에서 마지막 멤버가 임명된 이후로 90일전에 해야 한다. 그 후 위원회는 위원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서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하여야 한다.
(C) 투표와 규칙 - 과반수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족수보다 적을 때에도 위원회에 의해서 예정된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설립 될 수 있다. 위원회는 만약 규칙들이 이 법과 다른 해당 법에 상반되지만 않는다면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서 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다른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 (c) 의무들 - 위원회는 National Medal of Valor Office가 받은 지원서들 중에서 The Medal of Valor의 수여자로 후보자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Medal of Valor 수여자로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름이나 이름들을 제출한다. 주어진 년도에서 위원회는 수여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5명 이상은 선택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특별한 경우에 주어진 년도의 수여자의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법이 정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연간 계획일정 작성하여야 한다.

(d) 공청회

- (1) 일반 사항 -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고, 서약을 시행하고, 선서를 하고, 위원회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고려할 수 있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
- (2) 증인 비용(지출) - 위원회 앞에 나타나기를 요청받은 증인은 미국 법전의 title 28의 section 1821 에 있는 증인에게 지급되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증인을 위한 일일경비와 마일당 여비는 위원회의 기금으로부터 지급된다.

(e) 연방기관으로부터의 정보 - 위원회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연방 부서나 기관으로부터의 정보에 접근을 보장받는다.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f) 정보들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법 집행의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안이나 법에 의해서 요청되는 것은 기밀로 유지하여야하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 4. 위원회 관련 사항(BOARD PERSONNEL MATTERS)

(a) 위원들의 보상(수당) 문제 - (1)이 절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2) 각각의 위원들은 위원회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석하는 동안에 미국법령의 title 5의 section 5315에 규정되어 있는 Executive Schedule의 level IV 수준의 기본봉급을 받는다. (2) 공무원(officer)으로서 봉사하거나 미국정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고용된 모든 위원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것에 추가한 보상 없이 근무한다.

(b) 출장 경비 -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일당을 포함한 출장경비가 허용된다. 위원회를 위해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이나 정규적인 업무지를 떠나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률(subchapter I of chapter 57 of title 5)에 의해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SEC. 5. 개념(DEFINITIONS).

이 법에서 (1) 공공 안전 공무원(PUBLIC SAFETY OFFICER) - 공공 안전 공무원(public safety officer)라는 용어는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방관, 사법집행관련 공무원, 긴급 서비스 공무원 등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확정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단락에서는 law enforcement officer는 교정(a corrections) 혹은 법원 공무원(court officer)나 민방위 공무원(a civil defense officer)을 포함한다.

(2) 주(STATE) - 주(state)는 미국,the District of Columbia, 푸에르토리코 연방(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버진 아일랜드(the Virgin Islands), 괌(Guam), 아메리칸 사모아(American Samoa), 북 마리아나 아일랜드 연방(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의 여러 주들 중에서 한 개주를 의미한다.

SEC. 6. 승인권한(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장관(the

Attorney General)에게 있다.

SEC. 7. NATIONAL MEDAL OF VALOR OFFICE.

National Medal of Valor Office는 the Department of Justice안에 설립되어 있다. 사무실은 Medal of Valor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 그리고 Medal of Valor의 최종 마지막 도안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일에 참모로서 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

SEC. 9. CONSULTATION REQUIREMENT.

위원회는 the Department of Defense안에 있는 Institute of Heraldry에 메달의 디자인과 예술적 기교에 대해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Department of Justice가 제시하는 부서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 아닌 개인이 만든 것을 포함한 메달의 디자인에 대한 의견제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6>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 메달사진



3. United States law enforcement decorations

‘미국 훈장(United States law enforcement decorations)’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찰(the police forces)에 의해 수여된다. 미국에는 경찰이 분산되어 있는 이래로, 주 및 지역 단위에서 독립적인 분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 그대로 수천의 ‘law enforcement decorations’이 실제로 존재한다. ‘law enforcement decorations’는 경찰관이 법 집행 활동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정 경찰국(police department)에 의해 수여된다. 경찰국(police department)에서 수상되는 ‘law enforcement decorations’는 시·군 및 주 공무원(city, county and state officials)에 의해 수여된다. FBI·DE A⁶²) 및 부와 국토안보부서와 같은 연방 집행 기관은 개별적인 시정부가 미국정부의 권한 아래 훈장을 지급하는데 보통 현지 ‘law enforcement decorations’보다는 등급이 높다.

4.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은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 센터 및 미국 방부(The Pentagon)에 대한 테러 동안 근무 중에 사망한 442명의 공공 안전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미국정부의 훈장이다. 이 훈장은 2005년 9월 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에서 사망한 경찰관들에게 수여되었다.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및 Medal of Honor와 닮은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은 금빛과 밝은 파란 에나멜을 입힌,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는 별이 월계관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가운데에는(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어두운 파란 에나멜을 입힌 5각형이, 세계 무역 센터의 쌍둥이 타워를 의미하는 금박 원판과 함께, 날짜 “9, 11, 01”과 월계수 그리고 미국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미국 독수리가 있다. 메달은 월계수관에 둘러싸인 문자 “H”(Heroism)의 금빛원판이 파랑색이 금빛 밝은 파랑과 함께 가장자리와 흰색 가운데 줄무늬의 목 리본에 매달려있다.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는 오직 사후에만 오직 하나의 활동을 위해

62)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연방수사국,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마약단속국.

서 수여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착용되지 않는 기념 훈장이다.

<그림 5-7> The 9·11 Heroes Medal of Valor 메달사진



5. Law Enforcement Purple Heart

Law Enforcement Purple Heart는 미국의 사법훈장이 기술하는 일반적인 기간에 근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the Police Purple Heart(경찰 명예 전상상)가 수여되기 위해서, 경찰관은 범인과 가진 대치의 결과로서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지만 사고사 또는 (일반적인)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The Police Purple Heart 몇몇 다른 현지 경찰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발행을 위한 정확한

기준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 경찰마다 별도의 Law Enforcement Purple Heart를 운영하고 있다.

6.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of Honor⁶³⁾

뉴욕시 경찰에 대한 상훈제도는 NYPD Medal of Honor, NYPD Combat Cross, NYPD Medal of Valor, NYPD Purple Shield 등의 상훈이 있다.

가. NYPD Medal of Honor

“뉴욕시 경찰국 명예 훈장(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of Honor)”⁶⁴⁾은 뉴욕시 경찰국의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다. 명예 훈장은 근무 중에 시행된 생명에 극단적인 모험 및 위협에 특별한 용감성의 개인적인 행위를 위해 수여한다. 현 NYPD 명예 훈장은 1973년 10월 23일에 제정되었다. 훈장(medals)의 이전 명칭은 “경찰 은훈장(Silver Medal)” 및 “용기의 금훈장(Medal of Honor)” 등이 있다. 명예 훈장의 기원은 1871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훈장은 경찰청장의 자유재량으로 수여될 수 있던 은 또는 금훈장이다. 메달의 표면에는 “Municipal Police”란 단어와 경찰청장의 이름, 뉴욕시 경찰이 표시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훈장이 수여된 행위를 기술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후에 은훈장(Silver Medal)이 경찰 방패의 형태로 바뀌었다.⁶⁵⁾

“경찰 은메달(Police Silver Medal)” 및 “용기의 금메달(Gold Medal of Valor)”는 1871년 8월 17일 총을 쏜 후에 강도를 검거한 제 19 관할 구역의 순찰 경관 Bernard Tull에게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1884년 1월 21일에 최후로 수여되었다.

63) 뉴욕시 경찰국 명예 훈장(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of Honor)은 서비스의 일원에 수여되는 가장 높은 포상. 명예롭게 언급된 부서에서 특별히 용감한 또는 생명의 개인적인 절박한 위협에서 지적으로 수행된 개인적인 행위의 기록들에서 선택된다. 특히, 명예훈장 부서는 임무를 초월한 위험과 지식을 포함하는 용감하고 용기 있는 행위를 위해 수여된다.

64) <http://www.nyc.gov/html/nypd/html/chfpers/medal-of-honor.html>

65) 앞면에는 경찰관의 머리에 화환을 두어 주름잡아 드리워진 여성의 형태가 있다. 뒷면에는 도시의 감독관의 용감성 그리고 이름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

뉴욕시 경찰국 명예 훈장(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of Honor)은 1912년에 오른쪽 가슴에 패용할 훈장을 재설계할 때 제정되었고 1972년까지 수여되었다.

명예 훈장(the Medal of Honor)의 역사는 뉴욕시 경찰국의 발달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훈장 자체의 모양과 크기가 수년에 걸쳐 변화하더라도, 용기 있는 인간, 행동의 도덕성 그리고 및 용감한 행동에 대한 그 고유한 기준은 일관되게 남아 있다.

현 훈장은 1973년 10월 23일 Medal Day Ceremony에서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그것에는 3개의 별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유한 디자인이다: (1) “용기(valor)”를 막대기(bar)모양의 명패(inscription)로, (2) 녹색 리본에 붙은 12개의 흰색 별, (3) 가운데에는 뉴욕 시의 물개를 묘사한 여덟 개의 꼭지점이 있는 별모양의 황금빛 메달이다. “용기(valor)” 명패는 상징. 특별한 용감함의 절박한 개인적 위험에 실행했음을 상징한다. 리본의 녹색과 백색은 12개의 백색 별 묶음은 경찰국의 전통적인 색을 의미하고, 도시에서 첫 번째로 조직되고 중앙에 조정된 경찰대(police force)를 포함하는 원래 12명의 경찰관들의 표시이자 거슬러 올라가면 1700년부터 비롯된 경찰국의 전통적인 색깔을 의미한다. 게다가 집단의 다이아몬드에 의하여 형성된 형상은 1845-1857년 동안에 경찰관의 배지에 의해 영감을 주며 우리의 역사에 있는 중요한 기간의 기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수여된 인물은 John McDowell이다. 그는 1877년 1월 12일에 강도와의 총격전에서 접전하고 있는 동안 강도를 체포하기 위 현행범으로 잡아 저격하였다.⁶⁶⁾부(Department)로서 첫 번째 수여된 것은 John Sanders 경감팀이었다. “1883년 9월 22일 23관할구역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 John Sanders 경감을 비롯한 부서원이었다.”⁶⁷⁾

1888년 4월 20일 경찰청의 위원회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던 대로 훈장을 제정 시행

66) 유명한 보석상의 Tiffany에서 제작된 이 훈장은 전체적으로 4인치의 견고한 은으로 되어 있음, 정면에는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뉴욕시의 경찰위원회의 결의의 이행으로 1877년 1월 12일에 위원회의 해결책을 따라서 용감한 순찰 경관 John McDowell에게 수여한다”는 것이 새겨져 있다.

67) 기록에서 “Highly Honorable Mention”은 “그의 훌륭한 활동을 위해 이 부의 명예 훈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되어 왔다. 디자인은 두 번의 교체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12년 교체되었으며, 제작은 Tiffany에 이루어졌으며,⁶⁸⁾ 두 번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 경찰국 사학자인 Alfred J. Young에 의하여 1973년 디자인되었다.

나. The Police Combat Cross

The Police Combat Cross는 뉴욕시 경찰국의 두 번째 가장 높은 부문 포상이다. 경찰관이 생사가 달린 절박한 상황에서 무장한 상대를 슬기롭게 대처한 경우에 수여하는, 영웅적 행위에 대한 수상이다.⁶⁹⁾

The Police Combat Cross 1934년 8월 14일 뉴욕시의 경찰청장에 의해 제정되었다. 메달은 중앙에는 뉴욕시의 물개와 함께 황금빛 몰타 십자가 있고, “For Valor, Police”란 글자가 둘러싸고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의 이름 및 수여연도가 뒷면에 새겨져 있다. 십자가는 녹색 실크 리본에서 반지로 바뀌었다. The Police Combat Cross를 두 번째를 수여되는 경우에, 황금 종려 잎은 리본의 중앙에서 놓인다. 1998년, The Police Combat Cross의 세부사항 과 제작은 뉴욕경찰에 있어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하였다.

다. the Medal for Valor

뉴욕시 경찰국에 있어서 세번째로 높은 등급의 메달이다. the Medal for Valor는 근무 중에 급박한 생명의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용감하게 행동한 경찰관을 위해 수여 하는 포상이다.

68) 원형 비문 품는, 이 훈장은 가운데에 뉴욕시의 물개를 의미하는 청동원형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도토리 오크 잎 화환 안에 글자 “Police Department, City of New York,”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기를 위한(For Valor)란 글씨는 전부 오크 잎과 에이콘의 화환에 의해 포위된 월계 안에서 수여인 및 수여연도의 이름을 가진 반대면에 새겨져 있다.

69) 1934년을 7월 19일, 경찰 전투 십자가는 그 전 해에 영웅적인 서비스를 한 경찰국의 6명에게 처음으로 수여하였다.

<그림 5-8>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Medal 사진⁷⁰⁾

NYPD Medal of Honor	NYPD Combat Cross	NYPD Medal of Valor	NYPD Purple Shield
			

<그림 5-9> 기타 Police Department Medal 사진

Oklahoma City Police Department Medal⁷¹⁾

The Police Medal of Honor	The Police Cross	The Police Medal of Valor	The Medal for Meritorious Service
			

70) <http://www.nyc.gov/html/nypd/html/medals.html>

71) <http://ocpd.com/awards/medals.htm>

St. Louis County Police Department Medal⁷²⁾

The Police Medal of Honor	Distinguished Service Citation	Meritorious Service Citation	Purple Heart
			

72) <http://www.stlouisco.com/police/recognition/index.html>

<표 5-3> 기타 주들의 경찰상훈제도

지 역	내 용
New York City Police	NYPD Medal of Honor NYPD Combat Cross NYPD Medal of Valor NYPD Purple Shield
Los Angeles Police	Los Angeles Police Medal of Valor Police Commission Distinguished Service Medal Police Distinguished Service Medal Police Commission Integrity Medal Police Commission Unit Citation Los Angeles Police Medal Los Angeles Police Star Police Meritorious Service Medal Police Meritorious Achievement Medal Police Meritorious Unit Citation Police Lifesaving Medal Community Policing Medal Human Relations Medal
St. Louis County Police	St. Louis County Medal of Honor Police Medal of Valor St. Louis Distinguished Service Citation St. Louis Meritorious Service Citation Police Purple Heart Citizen's Recognition Medal
Denver Police	Denver Police Medal of Honor Denver Police Service Cross Denver Police Medal of Valor Police Purple Heart Police Lifesaving Medal Police Campaign Medal Physical Fitness Award
Columbia Police	Medal of Valor Purple Heart Certificate of Commendation Letter of Appreciation
Oklahoma City Police	Oklahoma Police Medal of Honor Oklahoma Police Cross Police Medal of Valor Medal of Meritorious Service

자료: 저자정리

제5절 호 주⁷³⁾

1. 개 요

호주의 상훈제도는 일반훈장(General Division)과 군인훈장(Military Division), 포장(medal)과 표창(Australian Bravery Decoration)이 있다. 일반훈장과 군훈장의 종류는 Companion of the Order(AC), Officer of the Order(AO), Member of the Order(AM), Medal of the Order(OAM)로 구분된다.

재난·사고시 긴급구조 등 공로가 있을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포장(medal)은 총 34개의 포장종류가 있다. 표창은 Cross of Valour(CV), Star of Courage(SC), Bravery Medal(BM), Commendation for Brave Conduct, Group Bravery Citation이 있다.

포상은 원칙적으로 호주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 호주를 위해 공을 세운자에게 포상한다.

정치적 후원이나 영향력과는 독립되어 있다. 포상추천기준은 훈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호주사회 혹은 인류에 크게 공헌한 자, 포장은 위기상황 대처를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공적, 표창은 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용감한 행위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적을 입증할 4명의 참고인이 필요하다.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도 훈장의 사후포상은 불가함(표창은 사후포상 가능). 포장은 최소 15년 이상의 공적기간이 요구된다.

2. 운 영

가. 공무원포상

포상결정절차는 훈종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일반훈장은 일반인 혹은 사회단체가 후보자 추천 → 연방총독실(공적조사, 참고인 접촉) → 훈장위원회(추천) → 연방총독(포상여부 결정)의 절차로 진행되며, 군인훈장은 국방장관(추천) → 연방총독(포상여부결정) 순, 포

73) <http://www.theorderofaustralia.asn.au/index.php>

장은 각 기관장(추천) → 연방총독(포상여부결정), 표창은 누구나 추천가능(사후포상가능) → 연방총독실(공적조사, 참고인접촉) → 표창위원회(추천) → 연방총독(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훈장위원회(Council of the Order)와 표창위원회(Australian Bravery Decorations Council)로 나누어진다. 훈장위원회는 각 주정부에서 1명씩 추천한 8명, 총리가 추천하는 지역사회별 대표 8명, 기타 공무원(연방정부대표·상훈담당 기구대표·군참모총장) 3명 등 사회대표 19명으로 구성되며, 표창위원회는 각주정부 대표 6명, 총독이 추천하는 지역사회별 대표 6명 당연직위원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포상시기는 연간 2회로서 훈장과 포장은 Australia Day(1월 26일)과 영국여왕생일(Queen's Birthday; 매년 6월)에 수여하고, 표창은 매년 4월과 8월에 수여한다.

상훈담당부서는 연방총독실 상훈실(Honours Secretariat), 총리실 상훈국(Awards and Culture Branch), 국방부 상훈국(Directorate of Honours and Awards)에서 담당한다. 서훈권은 호주총리에 의해 제정되고 영국여왕이 임명하는 연방총독이 행사된다.

제6절 외국 경찰상훈제도 시사점

영국, 미국, 일본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상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랜 역사와 상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면서 영예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사례들은 우리나라 상훈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외국상훈제도들을 통하여 상훈제도의 기본원리인 권위의 원리, 공정의 원리, 희소의 원리, 보상의 원리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운영상 특징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한국(『상훈법』), 독일(『훈장에관한법률』)을 가짐. 1957년 제정, 1997년 일부개정과 같이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미국, 영국과 같이 국가들이 각 훈장이 개별 근거에 의하거나 뉴질랜드와 같이 전통적 관습에 의해 오랫동안 영국의 상훈제도를 본받아 시행해 온 경우(1996년 독립적 상훈제도를 갖추)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각 분야의 공적이나 국가 사회적 기여도, 자기희생을 통한 인명구조 등 해당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명예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결정절차는 소관 부처 또는 단체의 추천 → 포상담당부처(전담기구 또는 서훈권자의 비서실, 내각의전국, 내각사무처, 각 부처상훈담당부서 등)의 조사 → 심의결정기구의 의결(심의위원회 또는 의회 등) → 서훈권자(대통령, 수상, 총리, 연방총독 등)의 결정의 과정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내각 사무처 의전 사무국(the Cabinet Office Ceremonial Secretariat)을 두어 상훈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 하고 있으며, 훈장은 10종으로 대부분의 훈장은 왕조시대의 전통계승 차원의 소규모 포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여되는 훈장은 분야별 구별없는 대영제국 훈장(5등급)으로 수여되고 있다. 등급은 훈장별로 단일등급에서 5등급으로 다양하다.

또한 경찰 등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Bravery Awards를 제정하여 국가의 최고수준에서 포상을 하고 있다.

영국은 상훈에 있어 영예성 및 공정성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훈 수여를 위한 투명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상훈수여, 사용되지 않는 훈장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훈대상자 선정시 전문가위원회가 있어 정부분야 종사하지 않는 다수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위원회 의장은 민간부분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상훈제도 관련 웹사이트에 일련의 정보와 절차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훈시스템과 관련한 인쇄물 제공, 상훈에 관한 수여자 통계 등 연간 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상훈제도는 일본헌법 제7조에 근거하고, 내각의 조인과 승인에 의해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로서 120년 이상 실시되고 있다. 훈장은 총 4종으로 국화장, 동화대수장, 육일장, 보관장으로 되어 있으며, 분야별 구분은 없다. 단 문화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2003년도에 일본도 120년간 지속되어온 상훈제도의 영예성과 공정성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개선노력에서 경찰관·자위관 등 현저하게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서훈의 종류를 신설하고, 이들의 업무분야에 있어 수상자수를 늘이고 수상자 연령을 낮추도록 하며, 또한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다 순직한 자의 공로를 보다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민간인이 생명·신체를 희생하여 공공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절한 평가를 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선노력은 미국과 함께 경찰 등 공공분야에 있어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훈장수여 대상과 서훈기준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2. 권위의 원리

권위(authority)의 원리는 수상하는 주체보다는 수상을 하는 주체에 대한 원리로, 수여주체는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국가적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이 주는 훈장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수여주체는 수상자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 주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일본, 영국, 미국은 각각 정통성을 가진 국가이며, 상훈제도가 일찍이 발달되고 정착되어, 상이 갖는 권위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많은 훈장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커먼웰스(Commonwealth of Nations)국가들은 영국 상훈제도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영국은 훈장수여식을 국가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영국민의 존경을 받는 여왕이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권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최고수장 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여왕, 대통령)이 상훈을 일정한 의식을 통해

수여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The Public Safety Officer Medal of Valor도 사법부에 의하여 상훈수여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수여자는 의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상의 권위를 높여주며, 상훈수여를 국가적 차원의 축제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상의 훈격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바탕이 되어야 더욱더 가치를 더할 것이다.

3. 공정성의 원리

공정성이란 상훈을 받는 대상자들을 평가할 때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영예성을 부여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상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객관적 업적평가, 정치성을 배제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도 일정부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루어져 상의 권위를 높이는데 일조, 이에 심사위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심사위원은 사전공개 또는 사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상훈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중 다수는 정부부문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의 수장은 민간부문 위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운영상 상훈선정과 관련하여 명백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위원들의 위원명단을 공개하고(자격 요건에 대한 공표), 선정된 위원들이 자유롭게 상훈선정자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상훈후보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희소의 원리

희소의 원리는 희소, 즉 드물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정기관 공직에 있

다거나, 특정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포상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의미없는 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최고 등급인 기사에 있어서는 일정수(생존자)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생전에 기사작위는 최고의 영예가 된다.

일본은 한때 훈장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일정부분 훈장 수여에 대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을 비롯한 위험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수 상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회소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 다수의 사기를 만족시키는 것과는 상반되는 원리이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회소의 원리는 오히려 상훈의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많은 대상자들중 1~2명만을 선발한다면,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회소성으로 인하여 최고의 영예를 가진 것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공훈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상태이면 자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상훈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소의 원리는 조직구성원에게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국과 일본에서는 회소의 원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인원에게 상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다수의 사람과 다수의 분야에 형평성을 고려한 상훈수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상을 수여받지 못한 분야, 사회적 공헌도는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한 상훈수여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회소의 원리를 통해 상훈수여자에 대한 영예성을 극대화 시키고, 다른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상의 원리

보상의 심리학적 의미는 '행위를 촉진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는 칭찬이나 물질'로 정의된다. 영국, 일본은 상훈이외의 별도의 특혜(칭찬이나 물질)가 없으나, 미국은 명예훈장 수상자 등 일정 부분에 대하여 특혜가 부여되기도 한다. 일본 경찰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훈의 보상이 정신적·경제적 보상이라고 할때,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적 보상도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적 보상을 통해서 상훈의 영예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일본 등에서는 상훈과 관련하여 직접적·물질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헌법과 상훈법에서는 보상에 대한 직접규정이 없다. 그러나 상훈을 받을만한 사람이라면 기존의 다른 보상제도, 예컨대, 공무원이면 승진이나, 인사사고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만한 사람이 상훈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다.

6. 기 타

상훈제도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상훈제도 실시 후 이들에 대한 공개를 위한 전용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관보에 상훈수여 대상자들의 공훈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여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사항을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해 두었으며, 수시로 검증을 통해 공적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시민단체 및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본은 ‘현민경찰관’이라는 것을 두어, 현에 있는 경찰관중 봉사성이 우수한 경찰을 포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현민경찰관은 단순히 경찰에 의해서 추천되고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 언론사, 지역의 대기업 등과 더불어 추천하고 수상하는 일련의 지역축제의 형식을 갖고 있다. 단순히 경찰만의 위한 축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사성·전통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훈장의 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훈장을 박물관 또는 전영 전시장을 통해 국민에게 전시하고 그 미적가치로 인하여 훈장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훈장 수여지들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부서에 상징물을 통해 나타낸다면, 그것을 그 부서의 역사과 될 것이며, 부서들이 그 상징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상훈 수상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공훈을 널리 알림으로써 스스로 훈장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다.

제6장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이,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자긍심을 갖고 경찰활동에 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찰관상(가칭)을 제정을 위하여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칭 최고경찰관상을 제정하기 위하여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최고경찰관상 제정을 위하여 13개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현행 경찰상훈제도의 효과, 최고경찰관상 제정을 위한 수여기준, 훈격, 수상인원과 같은 제반 내용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06월 07일부터 14일까지 경찰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 상훈제도와 관련한 실무자를 인터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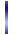


그러나 연구과정상의 한계(기간·인력 등)로 인하여 설문대상을 현직 경찰관에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찰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본 설문 내용을 공지한 후, 본 설문 주제에 관심있는 경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설문이 실시되었다.

제2절 조사대상자의 배경

경찰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조사에 총 16,93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급별, 담당업무별, 근무경력별, 근무지별 속성은 다음의 <6-1>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직급별로 경사, 경위, 경장, 순경의 순의 분포를 갖고 있다. 경위 이하의 경찰관들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샘플링을 통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경찰상훈제도에 관심있는 경찰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지다보니, 직급별 설문응답자의 구성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6-1> 직급별 설문응답자 구성










(명, 백분율)

(1) 순경		1437명 (8%)
(2) 경장		3513명 (21%)
(3) 경사		7097명 (42%)
(4) 경위		3852명 (23%)
(5) 경감		663명 (4%)
(6) 경정		284명 (2%)
(7) 총경		72명 (0%)
(8) 경무관		4명 (0%)
(9) 치안감		0명 (0%)
(10) 치안정감		2명 (0%)
(11) 치안총감		7명 (0%)
계		16931명 (100%)

담당업무별로는 생활안전, 수사·형사, 교통, 경무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 6-2> 담당업무별 설문응답자 구성






(명, 백분율)

(1) 청문감사		579명 (3%)
(2) 생활안전		6290명 (37%)
(3) 수사·형사		3404명 (20%)
(4) 교통		1643명 (10%)
(5) 경비		878명 (5%)
(6) 보안		769명 (5%)
(7) 정보		836명 (5%)
(8) 경무		1582명 (9%)
(9) 기타		950명 (0.6%)
계		16931명 (100%)

근무경력은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6-3> 근무경력별 설문응답자 구성







(명, 백분율)

(1) 5년 미만		1966명 (12%)
(2) 5년 이상 ~ 10년 미만		3031명 (18%)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2946명 (17%)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4074명 (24%)
(5) 20년 이상		4914명 (29%)
계		16931명 (100%)

근무지는 경찰서, 지구대, 지방경찰청 소속순으로 되어 있다.

<표 6-4> 근무지 설문응답자 구성

(명, 백분율)

(1) 경찰청		370명 (2%)
(2) 지방경찰청		2331명 (14%)
(3) 경찰서		8436명 (50%)
(4) 지구대		5019명 (30%)
(5) 기동대(직할대)등		380명 (2%)
(6) 기타		395명 (2%)
계		16931명 (100%)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 현행상훈제도와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

“귀하께서는 경찰 상훈과 관련하여 상훈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적당하다’가 42%, ‘많다’가 17%, ‘매우 많다’가

5%로 현행 경찰상훈에 종류와 수에 대해서 약 6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족하다’ 30%, ‘매우 부족하다’가 6%로 약 3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현행 경찰상훈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공무원포상과 경찰청 내부포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6-5> 경찰상훈제도의 종류와 수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매우 많다.		901명 (5%)
(2) 많다.		2833명 (17%)
(3) 적당하다.		7091명 (42%)
(4) 부족하다.		5156명 (30%)
(5) 매우 부족하다		950명 (6%)
계		16931명 (100%)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찰상훈제도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증진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매우 효과 있음”과 “효과 있음”이 각각 11%와 35%로 약 45%가 현행 경찰상훈제도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매우 효과 없음”이 4%, “효과없음”이 14%로 약 28%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약 36%로 중립적인 응답을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없다’라는 응답보다 많으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훈의 효과성에 있어, 경찰 상훈제도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에 경찰 상훈제도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6> 경찰상훈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명, 백분율)






(1) 매우 효과가 있음		1857명 (11%)
(2) 효과 있음		5866명 (35%)
(3) 보통이다.		6135명 (36%)
(4) 효과 없음		2451명 (14%)
(5) 매우 효과 없음		622명 (4%)
계		16931명 (100%)

“현재의 상훈제도가 효과가 없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⁷⁴⁾ 선행연구와 상훈(포상)과 관련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명예증진’, ‘실적에 대한 보상’, ‘오랜 근속기간에 대한 자부심’, ‘경찰업무에 대한 보람’, ‘조직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이라는 항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현행 상훈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이다. 전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18%~24%까지 고르게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상훈(포상)체계하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경찰상훈제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상훈(포상)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상훈제도가 갖는 기본 원칙 중 명예성(영예성), 희소성, 보상성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상훈(포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7> 경찰상훈제도의 효과미흡의 원인

(명, 백분율)






(1) 경찰로서의 명예 증진		5565명 (19%)
(2) 실적에 대한 보상 차원		7039명 (24%)
(3) 오랜 근속기간에 대한 자부심		5467명 (18%)
(4) 경찰업무에 대한 보람		5432명 (18%)
(5) 조직원으로서의 사기 진작		6282명 (21%)
계		29785명 (100%)

74) 복수선택케 하였다(2개).

“귀하께서는 경찰 기능별로 균등한 상훈기회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균등한 상훈기회 보장에 관하여 설문을 한 결과 전체 42%가 ‘아니다’, 17%가 ‘매우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각 9%와 1%로 매우 저조하였다. 현행 경찰상훈제도에서는 균등한 상훈기회가 보장되지 않다고 경찰관들은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찰상훈제도가 명예성(영예성)·희소성 보다는 위험한 업무 등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상훈(포상)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⁷⁵⁾ 이에 경찰 모두가 납득할 만하고, 기능에 상관없이 경찰을 대표할 수 있는, 경찰중에 경찰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8> 균등한 상훈기회 보장에 관한 인식

(명, 백분율)

(1) 매우 그렇다.		143명 (1%)
(2) 그렇다.		1478명 (9%)
(3) 보통이다.		5360명 (32%)
(4) 아니다.		7070명 (42%)
(5) 매우 아니다.		2880명 (17%)
계		16931명 (100%)

2. 가칭 최고경찰관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는 현행 상훈제도외에 국가적 차원의 최고 권위를 갖춘 경찰상훈제도, 가칭 최고경찰관상의 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매우찬성’이 32%, 찬성이 40%로 전체 설문응답자 중 72%가 가칭 최고경찰관상 제정에 찬성하였다. ‘매우 반대’는 4%, ‘반대’는 10%로 약 14%가 반대하였다. 전체

75) 경찰업무 중 주로 실적위주로 포상을 실시할 경우, 실적을 올리기 쉬운 기능이나 부서에서만 포상자가 나오며,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의 실적위주의 포상에 관하여 비판하고 있다. 주간동아 2007년 5월 9일자.

적으로 최고경찰관상 제정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

<표 6-9> 최고경찰관상 제정에 대한 찬반여부






(명, 백분율)

(1) 매우 찬성		5356명 (32%)
(2) 찬성		6815명 (40%)
(3) 잘 모르겠음		2428명 (14%)
(4) 반대		1650명 (10%)
(5) 매우 반대		682명 (4%)
계		16931명 (100%)

“귀하께서는 가칭 최고경찰관상 도입시 적정 수상인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전체 응답중 전체 ‘전체 경찰분야별 각 1인씩’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광역별 1인씩’이 20%의 응답을 얻었다. 전체경찰관 중 1명은 10%, 전체경찰관 중 2~3명은 11%, 기타는 6%의 응답을 하였다. 전체 응답중 ‘전체 경찰분야별 각 1인씩’, ‘광역별 1인씩’은 경찰 기능과 지역별로 최고경찰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훈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면서 기존의 상훈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선발하기 보다는 전체 공무원 중 한명의 경찰관을 선발하는 것이 명예성고 희소성의 원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10> 최고경찰관상 적정 수상인원에 대한 응답

(명, 백분율)

(1) 전체 경찰관 중 1명		1698명 (10%)
(2) 전체 경찰관 중 2~3명		1804명 (11%)
(3) 전체 경찰 분야별 각 1인씩		9008명 (53%)
(4) 광역별 1인씩		3362명 (20%)
(5) 기타		1058명 (6%)
계		16930명 (100%)

“귀하께서는 가칭 최고경찰관상 도입시 어느 직급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 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경위 이하’가 전체 응답자중 39%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계급’이 32%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 ‘경감이하’가 17%, ‘경정이하’가 7%, ‘총경 이상’이 1%였다.⁷⁶⁾

<표 6-11> 최고경찰관 도입시 선정 직급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경위 이하		6635명 (39%)
(2) 경감 이하		2866명 (17%)
(3) 경정 이하		1246명 (7%)
(4) 총경 이상		95명 (1%)
(5) 모든 계급		5454명 (32%)
(6) 퇴직자포함 모든 계급		635명 (4%)
계		16931명 (100%)

“귀하께서는 최고경찰관상의 훈격은 어떤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80%가 최고경찰관 도입시 훈격은 상훈의 최고수준인 ‘대통령상’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국무총리상’ 10%, ‘경찰청장상’이 6% 이었으며, 최고경찰관 상이 경찰을 대표하는 만큼 훈격도 그에 맞게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76) 경찰 관련 포상이 경위 이상의 간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경인방송 2004.11.18,
http://www.kfm.co.kr/news/section_news_read.html?id=34449&cla=newnews

<표 6-12> 최고경찰관 도입시 훈격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대통령상		13603명 (80%)
(2) 국무총리상		1663명 (10%)
(3) 경찰청장상		1090명 (6%)
(4) 기타		575명 (3%)
계		16931명 (100%)

“귀하께서는 최고경찰관상의 선발 주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56%가 ‘연간 1회’, 27%가 ‘1년에 2회’, ‘11%가 1년에 4회’, 6%가 ‘월간 또는 수시’로 응답하였다. 상훈제도가 남발되거나 수시로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희소성이 약해지면서, 상훈에 대한 영예성도 같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발주기를 연간 1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6-13> 최고경찰관 도입시 선발주기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연간 1회		9449명 (56%)
(2) 1년에 2회		4629명 (27%)
(3) 1년에 4회		1886명 (11%)
(4) 월간 또는 수시		967명 (6%)
계		16931명 (100%)

“귀하께서는 최고경찰관상의 수상을 위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봉사성·사회기여’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렴성’이 23%, ‘높은 실적’이 19%, 근무기간이 8%, 업무 위험성이 6%, 근무지역이 1%순으로 응답하였다.

위 응답결과를 토대로 할 때, 경찰관들이 동의할 만한 최고경찰관의 기준은 봉사성·사회기여, 청렴, 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봉사성·사회기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4> 최고경찰관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높은 실적		3259명 (19%)
(2) 근무기간		1403명 (8%)
(3) 청렴성		3821명 (23%)
(4) 근무지역		234명 (1%)
(5) 봉사성·사회기여		7125명 (42%)
(6) 업무 위험성		1089명 (6%)
계		16931명 (100%)

“귀하께서는 최고경찰관상의 추천과정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지방청별 추천’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 추천 + 사이버청 인터넷추천에 일반인 참여’가 24%, ‘지방청별 추천 + 사이버청 인터넷추천’이 16%, ‘지방청별 추천 + 사이버청 인터넷추천+자기 추천’이 16%, ‘지방청별 추천 + 사이버청 인터넷추천에 일반인 참여+자기 추천’이 11%로 응답하였다.

<표 6-15> 최고경찰관 추천방법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지방청별 추천		5577명 (33%)
(2) 사이버청 인터넷 추천(1 포함)		2744명 (16%)
(3) 자기추천 (1, 2 포함)		2770명 (16%)
(4) 사이버청 인터넷 추천에 일반인 참여(1포함)		4018명 (24%)
(5) 자기추천 (1,4 포함)		1821명 (11%)
계		16930명 (100%)

3. 최고 경찰관상 수여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는 최고경찰관상이 상훈외에도 다른 인센티브(진급, 포상 등)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9%와 3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에 응답은 각각 3%와 7%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5%로 응답하였다.

<표 6-16> 최고경찰관 인센티브 수여여부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매우 그렇다.		6064명 (36%)
(2) 그렇다.		8369명 (49%)
(3) 잘 모르겠다.		802명 (5%)
(4) 아니다.		1190명 (7%)
(5) 전혀 아니다.		506명 (3%)
계		16931명 (100%)

“귀하께서는 최고경찰관상이 상훈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가져야 한다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⁷⁷⁾ 상훈이외에 다른 인센티브 수여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39%가 ‘진급’을, 28%가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기회제공’, 18%가 ‘포상금’, 13%가 ‘휴가’, 기타 2%의 응답을 하였다.

<표 6-17> 최고경찰관 인센티브 수여에 대한 인식

(명, 백분율)

(1) 진급		9981명 (39%)
(2) 포상금		4536명 (18%)
(3) 휴가		3339명 (13%)
(4)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7268명 (28%)
(5) 기타		437명 (2%)
계		25561명 (100%)

77) 복수선택케 함, 2개 응답

제7장 최고경찰관 상(가칭) 제정 방안

제1절 최고경찰관상 제정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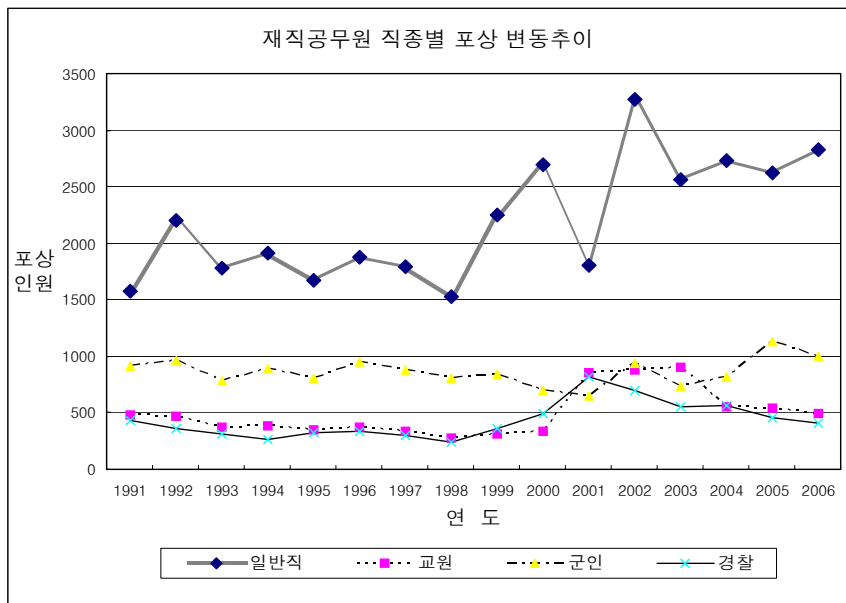
정부상훈 및 포상제도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가치의 최고훈장이 분야별로 존재하여 국가 훈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훈장을 받는 대상자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보다는 훈장의 역사적 특징상 특정계층, 분야에 치우쳐 있어 경찰사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과 일반 공무원간에 차별성이 없으며, 한국전쟁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군인을 위한 훈장은 제정되어 있으나, 경찰은 그렇지 못하며, 평화시 업무의 난이도를 볼 때, 군인과 유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더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함에 경찰 위상에 걸맞는 영예성을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상훈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영국·미국 등의 선진국도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공무원과 다른 관점에서 상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분야의 상훈도 최고 훈격으로 수여되고 있다.

이러한 상훈제도는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 및 법질서 수호에 있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며, 최고경찰관상 선발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찰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경찰과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제2절 정부포상 규모의 추이분석

정부포상규모의 추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부분의 포상비율이 2003년 이후 일반직, 교원, 군인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다.

<그림 7-1> 재직공무원 직종별 포상 변동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재직공무원의 연도별·직종별 포상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직은 2000년 이후 증가 추세 (2001년: 급감, 2002년: 급증)에 있으며, 교원은 2001 ~ 2003년 증가, 200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군인은 2005 ~ 2006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경찰은 2000년 이후 일정 (2001~2002년: 급증)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직과 경찰공무원의 포상비율을 살펴보면, 5.3배로 2006년도가 6.6배로 가장 컸으며, 2001년도가 2.2배로 가장 낮았다.

<표 7-1> 재직공무원 직종별 포상 변동추이

비 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반직	1,878	1,788	1,530	2,245	2,689	1,809	3,275	2,556	2,727	2,621	2,824
교 원	377	337	276	314	338	850	877	903	556	546	493
군 인	950	882	805	842	702	648	938	728	818	1,134	1,002
경 찰	336	305	240	361	488	819	700	550	563	453	409
일반직/경찰	5.6	5.9	6.4	6.2	5.5	2.2	4.7	4.6	4.8	5.8	6.9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일반직(지방포함) 공무원의 정원 및 총정원 대비 비중 완만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교원의 정원 및 총정원 대비 비중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은 정원은 지속적 증가, 총정원 대비 비중은 거의 일정하다.

<표 7-2> 직종별 정원 변화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 반 (지방포함)	386,371 (44.4)	382,932 (44.1)	390,128 (43.8)	398,748 (43.5)	410,765 (43.9)	425,293 (45.7)	437,558 (45.7)
교 육	289,140 (33.2)	291,257 (33.6)	303,271 (34.1)	316,881 (34.6)	322,396 (34.4)	328,105 (35.2)	339,409 (35.5)
경 찰	95,150 (10.9)	95,377 (11.0)	96,324 (10.8)	96,980 (10.6)	98,507 (10.5)	101,219 (10.9)	101,957 (10.7)
총정원	869,676 (100)	868,120 (100)	889,993 (100)	915,945 (100)	936,387 (100)	931,025 (100)	957,208 (10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괄호안은 전체정원 대비 구성비임.

<표 7-3> 직종별 포상인원 변화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 반 (지방포함)	2,689 (63.8)	1,809 (43.8)	3,275 (56.6)	2,556 (54.0)	2,727 (58.5)	2,621 (55.1)	2,824 (59.7)
교 육	338 (8.0)	850 (20.6)	877 (15.1)	903 (19.1)	556 (11.9)	546 (11.5)	493 (10.4)
경 찰	488 (11.6)	819 (19.8)	700 (12.1)	550 (11.6)	563 (12.1)	453 (9.5)	409 (8.7)
군 인	702 (16.6)	648 (15.7)	938 (16.2)	728 (15.4)	818 (17.5)	1,134 (23.9)	1,002 (21.2)
총규모	4,217 (100)	4,126 (100)	5,790 (100)	4,737 (100)	4,664 (100)	4,754 (100)	4,728 (10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비중은 43~46%인데 비하여 포상비중은 54~60%에 이르고 있다. 교원의 정원비중은 33~36%인데 비하여 포상비중은 10~19%이다. 경찰의 정원비중은 10~11%에 포상비중은 10~12%이다. 위 표들에 대한 분석결과 일반직과 군인은 정원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인원이 포상을 받고 있는 반면, 경찰은 포상

비중이 낮으며, 정원비율과 포상비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최고경찰관상 시행방향 및 원칙

1. 경찰최고의 권위 부여

현행 경찰 상훈제도운영과는 별도로 명예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경찰관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상훈자의 중복 수여가 가능하되 별도의 경찰 상훈프로그램은 명예성을 극대화 하며, 기타 상훈에 따른 부수적인 특혜를 두지 않으므로, 이중 수상이라는 문제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는 희소성의 원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희소성의 원리를 통해 개인의 영예성을 극대화하고, 중복수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타 상훈 수상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주요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용을 통해 최고경찰관상이 조직에 있어 명실상부 최고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복수여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찰의 정원 대비 상훈 비중이 타분야 공무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으며, 보상과 관련하여도 제도적으로 여타 포상이 더 잘 정비되어 있기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훈장이 경찰에게도 수여됨으로 훈격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중복수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권위는 일정한 형식과 최고의 권위를 소유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상훈은 계층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체계상 훈장이 최고의 훈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훈제도에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훈장을 받게 되어 있다. 즉 최고의 경찰관상을 받더라도 상훈의 계층상 훈장보다 훈격이 더 낮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최고경찰관상의 훈격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부수적으로는 현행 대한민국 상훈제도가 갖고 있는 예컨대, 등급의 문제, 훈장 수상 분야의 문제, 훈장 명칭의 문제, 퇴직자 훈장수여 관한 문제 등 과련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고경찰관상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최고경찰관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담당 부서는 공고를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상훈자를 추천받고,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일정기준을 통해 최고의 경찰관을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일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기존의 포상 즉, 근속경력에 따른 포상이 아니라, 해당 경찰관의 사회 기여도, 개인의 업무 역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최고경찰관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2. 절대적 가치의 제고

상훈의 4대 원리 중 희소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을 주기 보다는 최소의 인원을 선발하여 상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경찰분야별 각 1인씩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는데 이것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분야의 난이도가 상이하고, 각 경찰 부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고경찰관상은 경찰중에 경찰을 선발하는 제도로 각 분야 1인씩을 선발하는 것은 기존의 상훈처럼, 실적이나 연공서열에 의하여 수상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달리 전체 경찰관중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소 3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팀을 수상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각각의 수상대상자의 공적조서를 따로 작성케 하여 이중 일정기준에 제일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발된 경찰관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처럼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는 것도 절대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일 것이다. 이에 선발과정에서 절대기준점수를 두어 이러한 기준점수를 넘지 못하는 후보에 대하여는 수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경찰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선발

외국의 경우에도 시민단체, 언론, 국민들이 상훈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훈의 권위도 높이고, 상훈과 관련한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 선진국들은 상훈과 관련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 상훈의 영예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추천 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상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고경찰관상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고경찰관상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최고경찰관상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경찰청 내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 업적 평가 및 정치성을 배제한 인사를 실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On-Line을 통한 최고경찰관상 선발 운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상훈프로그램의 목적, 기준, 수상인원, 절차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더 나아가 최고경찰관을 선발하는데도 국민의 투표 및 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최고경찰관상이 단순히 경찰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상훈제도(훈장/특진/모범공무원표창)에서 보상의 원리를 충족시키며, 최고경찰관상은 기존 상훈과 별도로 운영하면서 기존 상훈제도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하며, 중복 수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경찰관들의 여론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의 날 등 경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에 시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절 최고경찰관상 선발 대상 및 일정

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공무원 중 3인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타 수상경력자도 수상 가능, 동일 수상경력자의 재수상 가능하도록 하며, 순직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수상도 가능하도록 한다.

경찰의 명예를 높인 최고 사례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며, 사회에 공헌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팀별 수상을 가능케 한다. 대신 팀별로 지원하되, 심사는 개인별로 하는 미국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최고경찰관상은 매년 1회 선발 및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의 날 등 특

정한 날 시상을 통하여 경찰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3명만 선발할 경우 경찰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훈시상식과 겸하여 시상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5절 최고경찰관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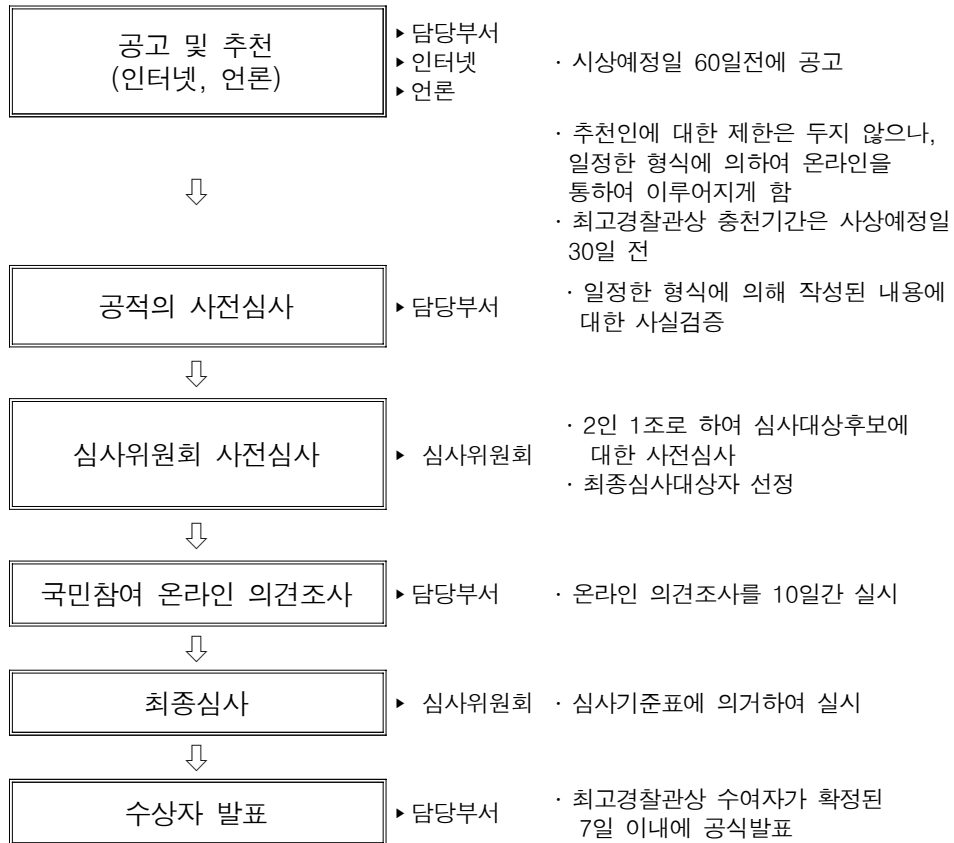
최고경찰관 선발을 위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1.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

1. 표창권자 소속하에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민사회 저명인사와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 1) 위원장은 표창권자가 시민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하고, 그 외의 위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경찰청 본청에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6.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는 심사관련 사항의 조사를 담당한 자 및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는 최고경찰관상 심사를 위해 추천 마감일 후 최고경찰관상 수상 일 전까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제6절 최고경찰관상 선발 절차

<그림 7-2> 최고경찰관상 선발 절차



1. 공고 및 추천

가. 공고방법

- 경찰청 공문, 인터넷, 관보 및 언론을 통해 최고경찰관상 시행에 관하여 시상예정일 60일전에 공고한다.

나. 추천방법

- 지방청단위의 추천, 시민단체에 의한 추천, 자기추천, 인터넷을 통한 국민추천 등 가능한 모든 추천을 허용한다.
- 추천을 위한 일정양식을 공문과 인터넷 공고에 첨부한다.(향후에는 추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 최고경찰관상 추천기간은 시상예정일 30일 전까지로 정한다.
- 최고경찰관상 추천대상 공적기간은 전년도 시상일 30일 전부터 당해 년도 시상예정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 추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회적 파급이 큰 공적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별도추천을 통해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다.

2. 공적의 사전심사

- 가. 최고경찰관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는 추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소요건을 갖춘 추천을 심사대상후보로 선정한다.
- 나. 사전심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 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을 2인 1조로 하여 심사대상후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심사대상(최고경찰관상 후보)을 선정한다(총 20건 이내)
- 다. 국민참여 온라인 의견조사 : 최고경찰관상 후보에 대한 국민참여 온라인 의견조사를 10일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찰관상의 최종 선발에 반영한다. (최종점수의 10% 이내 반영)
- 라. 최종심사 : 심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고경찰관상 후보별로 심사를 진행하여 후보별 점수를 산출한다.

3. 심의 확정

- 가. 최고경찰관상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 온라인 의견조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수여대상후보자를 선정한다.

나. 최고경찰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최고경찰관상 수여자를 확정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여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4. 최고경찰관상 수여자의 발표

가. 최고경찰관상 수여자가 확정된 7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경찰청 공문, 인터넷홈페이지, TV, 신문을 통해 최고경찰관상 수여자 및 수상공적을 발표한다.

5. 시 상

가. 경찰의 날에 시상한다.

제7절 최고경찰관상 선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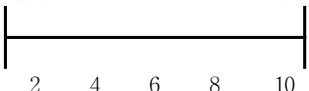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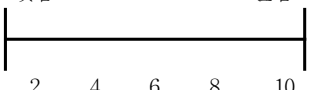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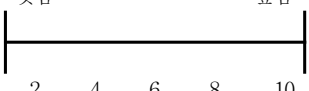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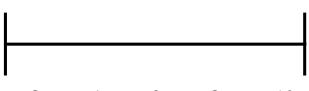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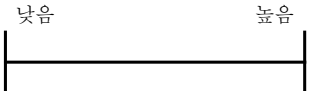
1. 최고경찰관상 선발은 심사위원회 90%와 국민인지도 10%

(온라인 국민의견 조사)를 통해 실시

2. 최고경찰관상 선발 기준표를 작성한다.

3. 작성된 선발기준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표 7-4〉 최고경찰관상 선발 기준표

지 표	세부지표	설 명	배점	등 급
사회 기여도 (40)	· 사회적 중요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된 문제인가?	20	낮음 높음 
	· 사회문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10	낮음 높음 
	· 사회안정 기여	사회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10	있음 없음 
경찰 이미지 증진 (20)	· 경찰 역할에 대한 국민 이미지 증진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는가?	10	낮음 높음 
	· 경찰 역량에 대한 국민 이미지 증진	국민들에게 좋은 기대를 갖게했는가?	10	낮음 높음 
개인업적 및 역량평가 (20)	· 분야별 계량지표	기존의 업적 및 실적 기존의 포상현황 및 기타	10	
개인 청렴도 (10)	· 분야별 계량지표	과거 5년 이내의 개인 상벌 이력 경징계 항목별 점수 중징계 이력자는 탈락	10	낮음 높음 

□ 최고경찰관상 선발 기준

1. 사회 기여도 (40%)

- 사회적 중요도 (20%)
 -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된 문제인가
- 사회문제의 난이도 (10%)
 -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 사회안정 기여도 (10%)
 - 사회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는가

- 2. 경찰 이미지 증진 (20%)
 - 경찰 역할에 대한 국민 이미지 증진 (10%)
 - 국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겼는가
 - 경찰 역량에 대한 국민 이미지 증진 (10%)
 - 국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좋은 기대를 갖게 했는가

- 3. 개인 업적 및 역량 (20%)
 - 분야별 계량지표(분야별)
 - 기존의 업적 및 실적 기존의 포상현황 및 기타

- 4. 개인 청렴도 (10%)
 - 계량지표
 - 과거 5년 이내의 개인 상벌 이력
 - 경징계 항목별 점수
 - 중징계 이력자는 탈락

- 5. 국민 인지도 (10%: 온라인 국민 의견조사)
 - 동일 점수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사전심사에서 총 90점 만점(국민인지도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추천 사항을 심사대상후보를 선정한다.

- 8.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 수상자 인센티브

- 최고경찰관상 메달 수여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가치의 메달)
 - 외국, 특히 미국의 메달의 경우에는 메달 디자인을 통해 경찰의 가치, 포상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경찰청 본청 로비에 수상자 및 공적사항 동판 영구 게시
 - 경찰청 본청뿐만 아니라 경찰박물관에 따로 최고경찰관 상 수여자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개인에게 최고의 영예를 박물관을 관람하는 국민에게는 훌륭한 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는 기회제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장·단기 국외훈련 또는 선진외국경찰 시찰 기회 제공 (배우자 동반)
- 국가 최고 명예인 훈장서훈 대상자로 추천

□ 수상자 사후관리

- 경찰박물관에 수상자 흉상 및 공적사항 전시
- 경찰교육훈련교재에 공적사항 소개/활용
- 경찰학교 및 유관기관 교육요원으로 위촉
(은퇴 후 명예 교육요원 자격 부여)

□ 수상의 취소

- 최고경찰관 상을 수상받은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반납시키며, 경찰직원에 어울리지 않는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최고경찰관상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상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이것을 반납시킬 수 있다.

참 고 문 헌

I. 단행본

- 강성철, 김판석 외 (2002),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권영성 (2005),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중양 (2004),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 김철수 (2005), 『헌법학원론개론』, 서울: 박영사
- 송하중 외 (1995), “과학기술활동촉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유종해 (2000), 『현대조직관리』, 서울: 박영사.
- 이강철 (1999), 『제국시대의 훈장제도』, 서울: 백산출판사.
- 이극찬 (2004),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총무처 (1984), 『상훈편람』
- 한영수·강인호 (2006), 『인사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 행정자치부 (1998), 『일본영전사무의 지침서』
 _____ (1998), 『정부상훈편람』
 _____ (2001), 『정부의전편람』
 _____ (2002~2007), 정부포상업무지침
- 황규대 외 (2000), 『조직행위론』, 서울: 박영사
- 황성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2006
- 藤堅準二 (1972), 日本賞勳制度. 大阪: 保育社.
- 榮典事務の手引 (1994). 동경: ぎょうせい.
- Herzberg, Fredrick (1966). Work and Nature of Man. New York: World Publishing Co.
- Maslow, Abraham.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ing Co.

- Peter Duckers. (2004). British Orders and Decorations. London: Shire Books
- UK, Cabinet Office (2005), Reform of the Honours System, London: Stationery Office
- Vaclav Mericka. (1964). Orders and Decorations. London: Paul Hamlyn Limited. Co.

II. 논 문

- 김경식 (1986), “상훈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창식 (2001),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훈장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 방종식 (2004), “육군 상훈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윤호 (2003), “포상제도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재 (1987), “대한민국정부의 상훈관리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기욱 (1982), “군포상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원 (2002),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 및 교육훈련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초급간부경사·경위 경찰관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 한국공안행정학회
- 유영현 (2007), “보상유형별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 14권 제 1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정무설 (1997), “정부상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우열·손능수 (2006), “순찰지구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3호, 서울행정학회
- 최영민 (2002), “대한민국 상훈체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종술 (2002),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최유성 (1999), 『과학기술훈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최학봉(2005), “경찰의 사기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공안행정학보 제 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Leighton Alexander H. (1947). Improving Human Relations, Applied Science of Human Relation. Personnel Administration, Vol. 19, No. 6.

III. 기타

<http://www.police.go.kr/> 사이버 경찰청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honours.gov.uk/>

<http://www8.cao.go.jp/intro/kunsho/index.html>

<http://law.e-gov.go.jp/>

<http://www.police.kanazawa.ishikawa.jp/>

<http://www.police.kanazawa.ishikawa.jp/>

<http://www.ojp.usdoj.gov/>

<http://www.nyc.gov/>

<http://ocpd.com/>

<http://www.stlouisco.com/>

<http://www.lapdonline.org/>

<http://www.elyriapolice.org/>

<http://www.theorderofaustralia.asn.au/>